



2018년 국방예산 의견서

2018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의견서

발행일 2017. 11. 6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락 02-712-8443, spark946@hanmail.net

차례

- 02 (1) 장교 인건비(1100-151)
- 13 (14) 군인연금기금 일반회계전입금(91-991)
- 19 * 특수활동비(230-00)
- 27 (156)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5131-302)
- 33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 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
- 38 (54) K-2 전차(2232-302)
- 43 (100)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 49 (123)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2432-308)
- 55 (164) 패트리엇 성능 개량 사업(2533-308)
- 59 (175) 철매-II 성능 개량(2532-339)
- 63 (131)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R&D)(2531-314)
- 69 (178)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 CBU-105(2533-303)
- 73 (146)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R&D)(신규)(2531-315)
- 77 (123) F-35A (2433-300)

(1) 장교 인건비(1100-151)

1. 개요

(단위 : 억 원)

소관	사업 성격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가 (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42,092	43,013	921	7,361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사업 목적> 장교 71,461명 및 사관후보생 4,510명의 봉급 및 제 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 ② <2018년 장교인건비 증액 사유> ‘공통처우개선 소요’ 733억 원, ‘군 구조개편에 따른 장교 682명 증원 소요’ 195억 원 등.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장성정원 9명 감축은 국방개혁의 의지로 보기 어려워

- 내년 장성정원은 전년에 비해 9명이 감축된다. 이는 2006년 국방개혁이 시작된 이래로 한 해의 감축 수치로 보면 가장 많은 수다. 그렇지만 이를 국방개혁의 의지로 평가하기 어렵다.

<표1> 장성 정원 추이(단위 : 명)

회계연도	2006	2011	2015	2016	2017	2018
정원	442	444	441	437	436	427

- 2019년 1월에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될 예정이다. 그런데 1군 및 3군사령부의 중복된 장성직위는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정보·작전·화력·공병·군수·인사·관리·지휘통신·동원참모 등 모두 12직위인 바 지작사 창설과 함께 12명의 장성정원을 줄일 수 있다. 또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의 해체 및 통합과 함께 군단수도 현재 8개에서 6개로 준다. 2개 군단이 3군단과 8군단 통합, 1군단과 6군단의 통합 방식으로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제7기동군단 예하 사단의 통합(8사단과 26사단의 통합과 11사단의 20사단으로의 흡수 통합)등이 2018년 중에 이뤄진다. 1개 군단은 보통 10~11명의 장성직위를 운영하고 있는 바, 2개 군단이 해체되면 장성직위를 최소 20명 정도 줄일 수 있다. 지작사 창설과 함께 줄어드는 장성직위는 최소한 30명이 될 것이므로 내년도 장성정원 9명 감축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 또 2006~2016년 사이 부대의 해체·감편으로 없어진 장성 직위가 23개였다. 그럼에도 실제로 줄어든 장성정원은 5명뿐이었다. 그것은 국방부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존 부대·조직 내에 장성직위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식으로 18명의 장성을 새로운 장성직위에 보직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성정원의 포화상태와 조직의 비대화는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내년도에 장성정원이 9명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래전에 이미 감축되었어야 할 장성정원의 감축소요(18명)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6년 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병력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장성정원은 지금보다 100명 이상 줄어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바탕이 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20’에 따르면 병력규모를 68.1만 명(2005년 말 기준)에서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26.6% 감축이다. 이 병력감축 비율을 적용하면 2005년 장성정원이 442명이었으므로 최소한 118명이 줄어야 한다. 118명을 줄려면 향후 5년간 매년 24명을 줄여야 한다. 이런 단순계산법에 의하더라도 내년도 장성정원 9명 감축은 장성감축계획으로서 매우 소극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다음은 문재인정부가 장성감축의 분명한 계획과 일정 그리고 이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장성감축이 또 다시 공염불로 끝날 수 있음

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국방부는 2012년 7월 30일 군조직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육군본부의 부장(소장)-처장(준장)-과장(대령)으로 이어지는 결재 단계 중 처장 직위만 없애도 장성 직위 20개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육군본부는 정작 2014년 차장(‘처장’이 명칭만 바뀜) 직위를 늘리는 직제 개정을 단행하였다. 육군본부 직제는 2014년 이전까지는 일반참모부에만 처장 직위를 두고 특별참모부에는 처장직위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에 일반참모부만이 아니라 특별참모부에도 차장 직위를 둘 수 있게 직제를 개정한 것이다. 직제개정 때 ‘처장’의 명칭이 ‘차장’으로 변경되었는데 명칭만 바뀌었을 뿐 차장직위나 처장직위나 보임되는 계급은 똑같이 준장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4년 육군본부 직제개정 때 헌병실장과 시설실장, 의무실장 직위도 신설돼 육군본부의 장성급 직위가 크게 늘어났다. 비대한 상부구조에 대한 국방부의 군살빼기 약속이 육군본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의해 무색해진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국방개혁 2.0을 시작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시 말해 국방개혁의 미명 아래 자신의 기득권을 확장하는데 오로지 관심을 가졌던 ‘국방개혁 1.0’과 명확히 다른 국방개혁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출발부터 과감한 장성감축에 나서야 한다. 언론은 “현재 장성 수에서 최소 20~30%를 줄일 것으로 안다. 장성 직제 개편과 임무가 중복된 부대 통폐합, 지작사 설립, 병력감축에 따른 부대 해체 등을 고려하면 현재 장성수의 20% 감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뉴스1, 2017. 7. 14)라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만약 30%의 장성정원 감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2017년 정원 436명을 기준으로 할 때 131명을 줄여야 하는데 이 목표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매년 26명 정도씩 줄여야 한다.

② 새로운 부대창설이 줄줄이 예정돼 앞으로 장성정원이 꼭 준다는 보장이 없다.

- 내년도 장성감축 9명이 국방개혁 의지나 장성감축 의지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장성직위의 신설을 가져오는 부대창설이 올해 말부터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창설할 예정인 부대를 보면 육군 동원 전력사령부(2018년 창설 예정),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특수작전항공단(2018년 창설 예정) 및 특수임무여단(2017년 12월 창설 예정), 해군의

1개 기동전단 추가 창설(2025년 예정)과 기동함대 창설(2030년 예정) 및 항공사령부 창설(2023년 예정), 해병대의 상륙작전항공단(2021년 예정)과 전략도서방위사령부(2020년 예정), 공군의 항공정보단(2017년 12월) 및 정찰비행단(2020년 예정) 등이며 전략사령부도 창설될 예정이다. 육해공군이 서로 몸집 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이런 부대의 창설은 비대하고 방만한 군 구조의 슬림화나 복잡한 지휘구조의 단순화라고 하는 국방개혁의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가령 공군과 별도로 육군, 특전사, 해군, 해병대가 각각 항공사령부 또는 항공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3군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 지휘구조의 단순화, 중복된 조직의 간소화라고 하는 국방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는 이런 부대창설이 ‘한국 주도의 작전 개념 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유사 시 방어에 집중하다가 미 증원 전력의 지원으로 반격하는 기존의 미국 주도 작전 개념에서 벗어나 전쟁 초기에 첨단 전력으로 적(북한)지도부를 궤멸시키는 한국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 수행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고 한다.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 수행 개념’은 한미연합사령부의 4D작전개념을 한국군 주도로 실시한다는 개념인 바 선제공격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017년 8월 28일 브리핑에서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정보복체계)로 적을 초토화하는 그런 전력을 우리가 건설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위협 단계에서 공격하는 선제공격을 포함한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 주도의 공세적 전쟁 수행 개념은 한반도 전역으로 전쟁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북한의 궤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의 위반이다. 또한 공세적인 전쟁수행을 위해서는 북한 군사력의 최소 3배 이상이 되는 전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므로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운다. 또 공세적인 전쟁수행개념은 ‘북한 정권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인 흡수통일’의 배제(이른바 3NO) 및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전략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전략에도 배치된다. 또 무력을 통한 대북 점령을 목표로 하는 공세적인 전쟁 수행 개념은 미국의 뒷받침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결

코 한국 주도의 전쟁 수행 개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부르게 되어 한반도를 또 다시 국제 대리 전쟁터로 만드는 무모한 전략이다.

- 한반도에서 공세적 전쟁 수행 개념은 실행되어서도 안 되고 실행될 수도 없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를 빌미로 한 새로운 부대창설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을 명분으로 몸집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분히 기득권 확장의 수단으로 ‘한국 주도의 작전 개념 정립’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 공세적인 전쟁 수행 개념을 명분으로 한 육해공군의 경쟁적인 몸집불리기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장성 정원의 실질적 감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국방개혁 2.0은 용두사미가 된 이전 국방개혁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③ 중령 및 대령의 정원이 더 늘어나는 내년도 장교인건비 예산

-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는 그 수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어 인건비 압박, 군 인연금 지출 압박, 정원 외 초과운영, 과도한 진급경쟁, 군 행정조직의 비대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을 보면 중령 및 대령 정원은 더 늘어난다. 영관계급 정원은 2018년 21,310명으로 2017년 21,050명보다 260명이 더 는다. 국방부는 기밀임을 내세워 260명의 계급별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소령 이외에도 중령과 대령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 국방부는 1993년 7월 6일 “군 정원 및 인력 구조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1993년 당시 영관장교의 정원은 17,870명이었는데 실제 운영인력은 19,053명으로 무려 1,183명이 정원 외 초과 운영되고 있었다. 대령이 정원 1,881명보다 358명 초과 운영되었고 중령은 정원이 5,643명이었는데 최소 525명 초과 운영되었고 소령은 정원이 10,346명인데 정원이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다. 장성도 정원(434명)보다 무려 62명이 정원 초과 되었다. 1992년 7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던 고급장교 1,000여명을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군 정원 조정안’에 서명하였

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또 다시 1,000여명 이상의 고급장교가 정원 외 초과 운영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불법적인 고급장교 인력의 정원 초과 운영에 대한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국방부는 1993년 7월 “군 정원 및 인력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개선안은 대령 정원을 1,881명(당시 정원)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령과 중령과 소령의 비율을 1 : 3 : 5.5에서 1 : 2.5 : 4.5의 비율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 국방부의 기준(1993년 안)대로 하면 영관장교 정원은 15,425명(대령 1,881명, 중령 5,079명, 소령 8,465명)이 되어야 한다. 2018년 예산편성 상 영관장교 정원 21,310명은 1993년 국방부의 기준대로 하면 5,885명을 초과한 것이다.

- 장성 정원 감축은 중령 및 대령 정원의 감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년 부터 시작되는 국방개혁 2.0이 용두사미가 된 기존의 국방개혁과 다른, 명실상부한 국방개혁이 되려면, 또 군 인건비의 효율화를 꾀하고 정예군 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령 및 대령의 정원을 5,900명 정도 줄여야 한다.

④ 준위 정원의 감축 필요성

- 장교 인건비는 매년 수백억 원의 불용액을 낳고 있는데 그 중 상당한 액 수가 준위의 과도한 정원 때문이다. 2016년 결산을 보면 장교 인건비의 불용액이 236억 원인데 이 중 준사관의 불용액이 151억 원이다. 이처럼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준위의 2016년도 정원이 6,448명이지만 실제 운영인력은 정원보다 428명이 적은 6,020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준위 정원은 2017년 6,428명보다 41명 감소하는데 불과하다. 이런 약간의 감축만으로는 또 다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는 준위의 정원을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61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단계적 감축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준 위 정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운영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원의 숫자를 줄이는데 불과하고 감원대상이 되는 준위도 전문·기술 분야가 아닌 비기술직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⑤ 병 봉급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해 장교 인건비의 대폭 삭감은 불가결하다.

- 정부는 내년에 병 봉급(병장기준)을 2017년 최저임금(주 40시간 근무 기준 135만원)의 3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상근 예비역 15,992명 포함하여 408,469명) 인건비는 2017년보다 7,668억 원이 오른다. 2018년에 병(현역) 인원이 22,123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병 봉급의 인상률이 높아 병 인건비가 전년대비 73.2% 오른다.
- 정부는 2020년에는 병 봉급(병장기준)을 2017년 최저임금의 40%수준, 2022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2017-2021)을 보면 2020년에는 병 인건비가 1조 2,829억 원, 2021년에는 1조 3,727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 병 인건비는 2017년 1조 472억 원보다 3,255억 원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런 국방중기계획상 병 인건비 인상은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상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임기 내 병 봉급의 최저임금 50% 보장' 공약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2022년 최저임금의 50%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 병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병 봉급의 인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만큼 병 봉급의 인상이 가져올 인건비 압박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2018년도 국방예산 상 인건비가 국방비와 경상비(병력 운영비와 전력 유지비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7% 및 62.1%나 되기 때문에 병 인건비의 증가는 국방비에 큰 압박이 아닐 수 없다.
- 그뿐이 아니다. 정예군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부사관을 2017년 현재 13만 명에서 15.2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사관 2.2만 명을 늘리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도 최소한 1조원이 넘는다. 또 병 봉급이 인상되면 병 봉급과의 역전현상을 피하기 위해 사관 후보생과 부사관 후보생의 봉급도 올려야 한다. 2022년이 되면 국방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
- 지금 병 봉급이 낮은 것은 국방비의 절대 액수가 낮아서가 아니다. 병 봉급 인상을 위해 국방비를 크게 올린다면 국방비의 비효율성과 낭비의 개선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병 봉급이 낮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이다. <표2>는 부사관 이상의 계급에 대해서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봉급 격차를 비교한 표인데 한국이 5.6배(2017년)로 미국 4.0배나 일본 4.4배, 프랑스 2.4배, 독일 3.3배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는 한국의 경우 고급장교의 봉급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건비 압박 없이 병 봉급을 인상하자면 고급장교 인건비의 대폭 삭감은 필수적이다.

<표2> 상위 및 하위 계급의 봉급 격차 (국가별 비교)

국가	군인 봉급	격차
한국(2017)	대장 141,188,000원 하사 25,391,000원	5.6배 (대장/하사)
미국(2017)	대장 15,583달러 하사 3,852달러(20년근무)	4.0배
일본(2016)	중장 1,175,000엔 하사 267,300엔(중간호봉)	4.4배
프랑스(2017)	중장 5,970유로 하사 2,507유로(월급)	2.4배
독일(2017)	봉급 최상위 10% 121,762달러 최하위 10% 32,475달러 (최하위는 병계급 포함)	3.7배

자료출처

한국: <2017년 국방통계연보>, 일본: <아사히신문, 2016년 방위핸드북>,
미국: <https://militarybenefits.info/2017-military-pay-charts>,
프랑스: <http://www.emploitheque.org/remuneration-militaires.php>,
독일: <https://www.simplyhired.com/salaries-k-german-army-jobs.html>.

- 또한 병 봉급인상이 국방비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예군화에 기여하려면 반드시 병력감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병력감축 목표가 52.2만 명(또는 50만 명)으로 고정되고 병의 인력이 30~4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병 봉급 인상은 명백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병 봉급 인상 효과도 인플레이 등의 요인으로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병 봉급의 실질적인 증가와 정예군화를 위해서는 전체 병력감축의 목표치를 50만 명보다 낮은 40만 명 이하로 하고, 병의 규모도 20만 명 또는 그 이하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

⑥ 군사독재 잔재를 남기고 있는 2018년도 장교 인건비 예산안

- <표3>은 같은 직급(직위)인데도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본부)에서 같은 과장직책(4급)을 맡고 있어도 군인(대령)은 일반 공무원보다 월급이 216만 원 가량 더 많다. 담당급(5급)의 경우에는 군인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월급이 274만 원 더 많다. 이런 차이는 군인의 경우 두 직급 높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표3>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비교(2016년도 기준)(천원 이하 절사)

	과장급(4급)	담당급(5급)
군인	1억598만원(대령)	9,970만원(중령)
일반직 공무원	8,006만원	6,686만원
연봉차액(월급차액)	2,592만원(월 216만원)	3,284만원(월274만원)

자료출처 :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2017년 9월 26일 청구)

- 군인과 공무원의 대우 차이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국무총리훈령 제157호, 1980. 7. 29, 제정)및 총무처 예규 219호(1986 .6. 17)에 따른 것이다. 이런 관행은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군사독재시대의 유물이다.
-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군인을 2직급 높게 대우하는 것은 군의 문민화라는 관점에서조차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관행이다. 대장의 경우 장관급 예우를 받는데 국방부의 대장보직은 8명이므로 한 부처에 장관급이 9명이 있는 셈이다. 차관은 부처에서 서열 2위이지만 국방부에서는 서열 10위가 된다. 이런 상계를 벗어난 국방부 내 서열은 문민화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또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는 군인에게 잘못된 특권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팽창시켜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강요한다.
-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군인이 받는 특별 예우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합참의장은 직급으로 보면 차관보급(1급)에 위치한다. 한국 대장은 미국과 비교해서도 2직급이 더 높다.

-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특수 계급 제도를 부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는 같은 직책이라도 군인 신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대한다는 점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헌법 11조1항에 위배된다. 또 군인 예우지침은 군인을 특수한 신분집단으로 예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11조 2항에 위배된다.
-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 관행의 근거가 되는 군인 예우지침은 폐지되어야 한다.

4. 결론과 제안 : 장교인건비 예산 삭감 요구

① 장성 정원은 24명 줄인다.

- 장성정원은 24명 줄인다.(2018~2022년 사이에 최소 118명 감축을 목표로 한 수치임)
- 2018년도 소장 1명의 평균연봉은 1억21백만 원(2017년 평균연봉 1억 1,800만 원에 대해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 적용한 수치)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장성 24명 감축으로 절약되는 인건비 예산은 약 29억 원이다. 이는 봉급에 국한되는 비용이고 장성 유지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② 대령과 중령을 위주로 영관장교 정원을 5,885명 줄인다.

- 국방부 발행 <2017년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평균 연봉은 대령이 1억 7백만 원이고 중령은 9천 5백만 원이다.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를 적용하면 2018년 대령 연봉은 대략 1억 천만 원, 중령은 9천 8백만 원이 된다.
- 대령과 중령계급의 정확한 정원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령과 중령의

평균 연봉 1억 400만 원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영관장교 5,885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은 연간 6,120억 원이다.

③ 준위정원을 600명 줄인다.

- 2018년도 준위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17년 연봉 8,069만 원에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를 적용하면 8,279만 원이다.

- 준위 정원 600명을 줄이면 인건비를 49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④ 군인 예우 지침 폐기 시, 절약되는 장교 인건비

- 내년 장교 정원(사관후보생 제외)은 71,461명이다.

- 군인 예우 지침에 따른 봉급 증가 효과가 월 100만으로 치면 군인 예우 지침을 폐기할 경우, 장교 인건비는 연 715억 원이 절약된다.

5. 삭감요구액

장교인건비 중 7,361억 원을 삭감한다.

(14) 군인연금기금 일반회계 전입금(91-991)

1. 개요

(단위 : 억 원)

소관	사업 성격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25,046	26,076	1,030	8,129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예산내역

- ① <사업목적>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소요(일반회계 전입금)”
- ② <2018년 예산안 내역> 국가부담금(기여금·퇴직수당·재해보상·전투가산 부담금 등) 1조 976억 원 및 보전금 1조 5,100억 원(국방부, 『2018년도 국방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7. 9, 1939쪽)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군인연금 보전금에 따른 국가재정 및 국방비 압박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2016년 군인연금의 1명 당 기여금 납부액은 연간 302만원이고 1명당 퇴직연금월액은 255만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명 당 기여금 납부액이 연간 385만원이고 1명당 퇴직연금월액은 233만원이다. 즉 군인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기여금을 내고도 더 많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국방위소관) 분석>, 2017.10, 66쪽 참조).

-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은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수급자 1명 당 국가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512만원이지만 군인연금의 경우는 무려 1,349만원이다.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보전금 비율(2016년 기준)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19.2%이지만 군인연금은 그 2.4배인 46.2%에 이른다. 군인연금 지급의 거의 절반을 군인연금에 책임이 없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표1> 군인연금 보전금 추이(단위 : 억 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전금	13,733	13,431	13,665	14,657	15,100

- “2018년 1조 5,100억 원(예산)인 군인연금의 보전금 규모는 연평균 4.8%씩 증가하여 2045년에는 5조 4,56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국방위소관) 분석>, 2017. 10, 65쪽에서 인용)

② 군인연금 적자의 주 원인은 과도한 특혜다.

-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이 다른 특수직역 연금보다 심한 것은 각종 특혜 때문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급기여금 면제(군인연금법 제정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서 소급기여금을 면제해 줌), 퇴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등의 각종 특권을 주고 있다.
-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군인연금의 특혜에 대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사회 재취업 곤란 등 군 복무의 특성에 따른 보상이지 특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군인연금에 주어지는, 다른 공적 연금에는 없는 특혜들은 군 복무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군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시행된 것들이다. 즉 이들 특권은 문민통제가 확립되기 이전 군인 우위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군인연금을 노동력 상

실에 따른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일반적인 연금의 복지적 성격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기반 강화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던 것이다.

- 가령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에게 지급되었던 군인은급(연금)을 모방한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다. 그리고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던 군인들은 매달 참전명예수당(2017년 월 22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라 하겠다. 또 격오지 근무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등의 복무 특성을 내세우지만, 현직 때 군인들은 이미 격오지 수당이나 생명수당 등으로 보상을 받는다.
- 국방부는 '전역 즉시 연금지급' 제도에 대해서 “짧은 정년으로 대부분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본의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전역”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군인연금을 노동력 재생산비 개념인 봉급과 노동력 상실에 따른 노후보장개념인 군인연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오류다.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전역한다면 이는 사회 재취업 등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책이며 이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는 직업군인 전역자에 대한 재취업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연금의 가입대상자 가운데 생애최대지출기라고 하는 45~56세에 퇴직하는 군인은 2015년 퇴직자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퇴직자 20,775명 중 2,872명으로 13.8%에 불과하다. 이런 소수 퇴직자의 이익을 위주로 군인연금의 제도를 설계한다면 군인연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소수 특권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것이다.
- 군인연금의 특혜는 그 수혜가 고급장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고급장교(현역)는 그 수가 군 간부(2017년 현재 대략 19.5만 명)의 5~6%에 불과하지만 연금수급자의 30.7%(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 또 고급장교는 월 연금 250만 원 이상 수혜자(34,876명)의 48.2%를 차지한다.(국방부, 『2015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서 산출)

③ 군인연금법의 전면적 개혁이 요구된다.

- 국민은 군인연금의 개혁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2014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2014년도 국가부담금과 보전금 규모가

수입액의 82%로 국가재정 의존이 과도하며 2045년 및 2060년에도 지출의 50% 이상을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면서 ‘군인연금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3년 3월에 군인연금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공무원연금(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기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8.4%의 연금감액, 지급개시연령 65세, 연금 외 소득자 연금감액을 30~70%로 확대, 소득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가 소득상한제만 수용하고 나머지 요구는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표2> 2013년 군인연금법 개정 당시 관련 부처 입장

항목	기재부·행안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개정내용
연금액수준	신규자 8.4%감액	종전수준유지	종전수준
연금지급개시연령	65세	종전대로 퇴직 시	퇴직 시
소득상한제	도입	도입반대	도입
소득심사제	30~70% 감액	종전처럼 10~50% 감액	10~50% 감액

-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증가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등의 요구에 대해서 국방부는 "기금보유 부동산 매각 추진" 및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금융자산을 증대하여 이자수입(의) 증대"(『2018년도 국방부 예산안 사업설명서Ⅱ-1』, 1898쪽)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조치는 군인연금의 전근대적이고 불공정한 특혜를 온존시키는 발상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 우선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부분은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전역 즉시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이다. 군인연금은 도입된 이래 평균 수명이 52세(1960)에서 2012년 81세로 연장되었고 그 결과 25년에서 많으면 35년 넘는 수급기간의 장기화가 초래되고 있다. 장기기간의 수급으로 인한 연금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 이후로 늦춰야 한다. 국방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보다 짧은 정년 설정, 연금은 퇴역즉시

지급(미국, 프랑스, 대만 등)”한다면서¹⁾ 2013년에 기획재정부 등의 65세 수급개시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전역즉시 연금수급은 외국의 일반적 사례가 아니다. 스웨덴은 군인을 국가공무원의 일원으로 취급하는데 연금 지급은 대령 이하는 60세부터, 장성급은 65세부터 지급한다. 일본, 이태리, 호주는 60세가 연금지급 개시연령이다. ‘전역즉시’지급하던 호주와 영국은 각각 60세와 55세로 지급연령을 늦추었다. 미국은 60세로 연장을 검토 중이다. 독일은 계급별 정년이 보장된 직업군인(공무원과 같은 신분)은 정년 시(부사관은 55세, 위관급과 소령은 60세, 중령 61세, 대령이상 62세)에 연금이 지급되며 계약 군인(전체병력의 60%차지)의 경우 군인연금은 65~67세에 지급된다.²⁾

- 또 개혁해야 할 부분은 전투가산 부담금 문제다.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4항은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다. 전투가산 부담금은 이 규정에 따라 군인연금 가입자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제도다.
- <표3>을 보면 전투기간 3배 계산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2012년에 861억 원, 2013년 680억 원, 2014년 661억 원, 2015년 635억 원, 2016년 653억 원, 2017년 639억 원, 2018년 579억 원으로 해마다 기여금부담금의 10%에 이른다.

<표3> 전투가산금 추이(단위:억 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가 부담 금	전투가산부담금	661	635	653	639	579
	기여금 부담금	5,157	5,493	5,775	6,063	?
	기타 부담금	3,745	3,768	3,900	3,687	?
	계	9,563	9,896	10,328	10,389	10,976

-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군인은 65세부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월 22만원(2017년 기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1) 국방부 보도자료(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 2013.3.27, 2쪽.

2) 독일 군인조합(German Military Union)과 독일시민단체 등에 2014년 10월에 문의한 결과임. 김영태, “직업군인의 정년제도에 관한 연구”, 수원대 석사논문, 2012, 39쪽도 참조

받는다. 2018년 참전명예수당(국가보훈처 예산)은 총액이 7,696억 원이다.

- 군인연금 수급자 중 전투가산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15년 6월 30일 현재 확인 가능한 숫자가 2,878명이다.¹⁾ 전투가산 혜택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들도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중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투기간 3배 계산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군인연금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군국주의의 유산이다.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군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상적 시점에서 생명기간을 전시와 같이 볼 수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²⁾ 일본의 경우 패전 뒤 군국주의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이 통합되었고 군인우대제도도 없어졌다.

4. 삭감 요구액 : 2018년도 보전금예산 1조 5,100억의 절반인 7,550억 원과 전투가산 부담금 579억 원 삭감

- 국방부는 2018년도 국방예산사업설명서에서 "기금보유 부동산 매각 추진" 및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금융자산을 증대하여 이자수입 증대"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삭감되는 보전금 예산의 절반을 부동산 매각 또는 금융자산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 2018년에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지출을 줄이고 연금수입을 늘려 적자구조를 흑자로 바꿔나간다.
- 2018년도 전투가산 부담금(579억 원)은 과거 군사독재 잔재 청산, 이중특혜 폐기, 국가재정부담 완화 등의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다.

1)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의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임.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및 공비토벌작전 전투가산자, 연금수급 후 사망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현재 보유중인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군인연금 수급자 중 전투가산자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에서 파악된 숫자라고 함.

2) 오광석,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13, 12쪽

특수활동비(230-00)

1. 개요

: 2018년도 국방부 특수활동비 예산(안)

(단위 : 억 원)

소관	사업성격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 (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1,814	1,480	-334	1,480

- ① 국방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1,480억 원이다. 이 중 1,477억 원은 ‘군사정보활동’(7131-302)을 위한 것으로 국정원이 통제하는 예산이며 나머지 3억 원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 ② 국정원법 제12조③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정원은 국방부에 자신의 예산 중 일부를 계상해 놓고 있다.
- ③ 내년도 정부(19개 부처 및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모두 합쳐 8,219억 원이다. 여기에는 국정원의 본예산 4,9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이외의 부처나 기관(국방부를 포함)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3,289억 원이다. 그런데 부처나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3,289억 원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도 포함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국정원법 제12조③항에 의거하여 계상해 놓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의 통제 하에 있는 국정원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사정보활동’ 사업의 목적

-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및 생산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 특수활동비는 정부에 의해서 예산의 한 비목으로 편성되지만 다른 비목의 예산과 달리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계상되고 집행 방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집행내용 확인서의 구비까지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며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 (『2018년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 2016.7, 201쪽)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정부의 예산 편성 책임부서가 각 부처에 대해서 내리는 하나의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원칙으로서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에의 국민 참여 제고 노력’, ‘국민부담의 최소화’ 등의 의무(제1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이)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산의 원칙(제56조)을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이런 예산 및 결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 기획재정부의 지침대로 하면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사업 목적과 세부적인 예산 내역, 산출근거 등을 알 수 없고 또 결산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국가재정법(제29조)은 “기획재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등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임의적으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 할 수 있다.

- 특수활동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정부의 지속적 편성으로 관행이 되었다. 특수활동비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횡행하던 ‘관공비’(품위유지비)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런 관행이 폐지되지 않고 ‘특수활동비’로 이름을 바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라져야 한다.

②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는 독소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특수활동비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다.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국정원의 이름으로 편성된 사업비)과 타 부처 예산에 끼워 넣은 예산(특수활동비 비목으로 분류됨), 예비비(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음)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정원법 제12조③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예비비는 그 근거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두고 있다.
- 2018년도 국정원의 예산은 본 예산이 4,931억 원이다. 타 부처에 계상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2,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예비비를 배정받을 수 있는데 예년의 경험을 보면 그 규모가 거의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1>국정원 예산에 관한 각종 특례규정

	일반 국가기관	국가정보원(본예산)
예산안 제출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예산요구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총액 제출 ·예산안과 관련된 첨부서류 제출 면제
예산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정보위원회 심사 ·예결위 심사 생략 (정보위원회 심사를 예결위 심사로 간주)
회계검사	·감사원의 회계 감사	·국가정보원장이 회계감사

자료출처 : 김정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7, 58쪽

-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12조(예산회계)②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부에)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액만 제출하고 있으며 산출내역 등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정원법 제12조③항은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 국정원법12조⑤항은 국회정보위의 비공개 국정원 예산 심의와 예산내역의 공개 및 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정원법 제14조는 국정원장의 책임 하에 소관 예산의 회계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단계부터 결산에 대한 회계검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재정당국과 회계감독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국정원의 예산이 재정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은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재정당국(기획재정부 등) 통제바깥에 있다”(2017년 10월 31일)는 김동연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국정원법에 의해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정원법 제12조④항은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국회정보위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제12조⑤항은 국정원예산 심사를 국회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3조①항은 국회(정보위 등)로부터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는 경우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회정보위에서도 사실은 총액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받을 동동 구르는 것이 현실입니다.”라는 권은희 의원의 하소연(2015년 10월 27일,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공청회)은 국정원이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를 무기로 국회정보위의 예·결산 심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증언한다.
-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는 예산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의 원칙을 정한 국가재정법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감시와 감독기관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주며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을 침해한다. 국정원의 불법과 전횡, 횡포의 근간이 되는 이들 조항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③ 타 부처나 기관에 국정원 예산을 은닉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국방부는 <2018년도 국방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군사정보활동’(국정원

의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사업의 명칭) 사업의 법적 근거로 국정원법 제 3조①항을 들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직무)①항은 국정원 직무의 하나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는 기획·조정의 대상기관으로 통일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와 기타 정보 및 보안 업무관련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또 국정원법 제12조③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정원법 제3조나 제12조③항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내 여러 기관의 하나일 뿐임에도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부처나 기관의 정보예산 편성권까지 갖게 함으로써 마치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처럼 행세하면서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국정원의 전횡은 2012년 대선 및 총선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여 정치공작을 수행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국정원이 정보업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처의 업무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정부 부처나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조와 조정을 뛰어넘는 것이다.
- 또 국정원법 제12조③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의 예산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31조 등)에 어긋난다.

④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특수활동비의 법적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된다.

- 국정원법 제12조가 특수활동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정원법 제 12조 및 13조, 제14조가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특수활동비의 법적인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들 법조항들이 국정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예산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거나 국가재정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사용처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초법적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국정원법 제12조④항은 국회정보위에 국정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은 현행 국정원법 제12조②항에 의거해 예산의 세부내역이나 산출내역,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에는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법 제12조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할 의무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국정원이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을 내세워 국회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 없이 예산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이다.

⑤ 특수활동비는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다.

-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및 제14조 그리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무기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온갖 전횡과 횡포를 휘둘러왔으며 정권안보를 위해 불법도 서슴없이 저질러 왔다.
- 청와대가 2016년 초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하였다.
- 국정원은 2013~2015년 사이에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1억원(총 40억원)을 안봉근과 이재만 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추명호 국정원 국장은 2014년경에 국익정보국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500만원씩 당시 조운선·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특수활동비가 상급기관(청와대)에 대한 뇌물로 쓰인 사례다.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의 여직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댓글 알바생에게 월 280만원씩 11개월 동안 3,0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공식으로 사과하였다.(2013.11.4 경향신문) 이와 같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 국정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중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왔다. 국정원은 2012년에 사이버사령부 예산 170억 원 가운데 45억 원을, 2013년에는

253억 원 예산 중 57억 원을, 2014년에는 261억 원 중 60억 원을, 2016년에는 226억 원 중 36억 원을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하였다. 이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의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정치댓글활동에 쓰였다. 그런가 하면 김기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당시)은 2010~2012년 사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을 수행하면서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25만원씩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경향신문 2017년 8월 30일)

- 문재인 정부 들어 특수활동비 예산(국정원 예산 포함)이 2018년 8,219억 원으로 2017년 8,938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또 문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실태를 조사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수활동비의 문제는 운용이 아니다.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그리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특수활동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독소조항들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또 법적 근거가 없는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특수활동비와 연관된 국정원과 여타 정부기관의 각종 불법과 비리, 낭비는 다소 완화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 국회는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특수활동비에서 비롯되는 각종 불법과 비리의 여지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정원법 제3조와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를 폐기하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기함으로써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을 회복하고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국민 통제와 감시를 확립해야 한다.

4. 삭감요구액

①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특수활동비 3억원 전액 삭감

- 국방부가 ‘주요기관 경비’의 하나로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이므로 삭감한다.
-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투명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므로 삭감한다,

② 국방부 내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477억 원 전액 삭감

-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편성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그 사업목적과 산출내역 등이 투명하지 않는 등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국방부를 부당하게 통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의 온갖 불법과 비리, 전횡, 횡포의 근거가 되어 온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삭감되어야 한다.

(156)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5131-302)

1. 개요

(단위 : 억 원)

소관	사업성격	2017년예산 (A)	2018년예산안 (B)	증감(B-A)	삭감요구액
국방부	계속	4,097	4,442	345	4,442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 ①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이유

① 군사건설비를 미군기지 이전비에 쓰는 것은 LPP협정 위반이다

- 내년도 군사건설비는 거의 전액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쓰인다. 그러나 군사건설비(방위비분담금)를 미군기지 이전에 쓰는 것은 LPP협정에 위배된다. LPP개정협정에 의하면 기지 폐쇄 대상 31곳 중 미국이 기지이전을 요구한 22곳의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② 현금이 총 군사건설비의 12% 한도를 넘어서 지급하고 미국 기업체가 건설시공을 하는 것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이다

-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2014년 1월 9~11일)에서 한미는 특정군사건설사업(SCIF 등)의 경우 총 군사건설사업비의 12%로 제한되어 있는 현금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로 현금을 지

급할 수 있고 또 미국 업체가 시공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이면합의에 가서명하였다고 한다. 이 이면합의 뒤 미국은 그 합의내용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이행약정’(2014년 6월 18일 서명)에 명시할 것을 강요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 그러나 특정건설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12% 한도를 넘어 현금을 지급하고 또 미국 기업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면합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에 위배된다. 위 교환각서에 의하면 현금지급은 설계와 감리(군사건설 총사업비의 12%로 제한)에만 한정되고 나머지 88%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위 교환각서는 한국이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을 시행하며 한국 업체가 시공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이하 이행약정)은 모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처(기관)의 대표가 서로 합의한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여(조약이 아니므로)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권리와 의무 관계를 창출해서는 안 된다. 또 기관 간 약정으로서 이행약정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교환각서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이점에서 교환각서를 위배하고 또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한국에 부과하고 있는 이행약정은 원천적으로 불법무효이다.

<표1> 주한미군 SCIF 건설 현황(미 공병단 극동지구 연보 2014~2016)

위치	프로젝트(시설)명	진행연도	설계진행	건설진행
평택 (험프리)	전투지휘훈련소 (BCTC SCIF)	2014	89%	0%
		2015	99%	0%
		2016	100%	0%
평택 (험프리)	통신센터 (Communication Center SCIF)	2014	100%	0%
		2015	100%	45%
		2016	100%	92%
부산	주한미해군 본부 (CNFK HQ SCIF)	2014	6%	0%
		2015	100%	0%
평택 (험프리)	제2사단 본부 (2ID HQ SCIF)	2014	100%	5%
		2015	100%	40%
		2016	100%	99%

- <표1>을 보면 주한미군의 SCIF의 설계와 건설 진행 상황이 나와 있다. 김경협 의원실 보도자료(2017. 10. 12)에 의하면 SCIF의 시공을 미국가 정보국(DNI)의 ‘첩보통신지침(ICD)705’보안인가를 받은 미국업체들(길바인, 허버트 인터내셔널 등)이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미국이 군사건설비(방위비분담금)를 사용해서 SCIF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면 이는 ‘건설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위반이다.
- 미 국방부의 자료(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를 보면 각 회계연도별 미국 국방예산 상의 주한미군의 군사건설비(military construction)는 2014년 52백만 달러이고 2015년, 2016년, 2017년은 각각 0달러로 되어있다. 따라서 위 <표1>에 나타나 있는 SCIF 건설자금의 출처는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2008년까지는 군사건설비의 95%가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에서 축적해 온 현금을 SCIF 건설에 썼거나 앞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군사건설비에서 모두 1조 1,193억 원(현금)을 축적하였고 이 돈이 2016년 말 현재 3,331 억원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 돈은 불법적으로 축적된 돈이므로 한국에 회수되어야 하지만 만약 이 돈을 SCIF 건설에 쓴다면 이는 LPP협정이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위배된다. 평택 험프리기지의 미2사단 본부나 통신센터, 전투지휘훈련소 등의 SCIF 건설공사는 LPP협정 또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따른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인 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LPP개정협정 또는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정에 따라야 한다. LPP개정 협정에 의하면 미2사단 본부는 미군이 대체시설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제5조 3의 가항)은 “(한국은) 새로운 시설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존장비를 이전한다. 특정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한국의 부담은 미화 9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제5조 3의 나항)은 “유엔사 및 연합사를 위하여 현재 기획·계획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를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다. LPP개정협정과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에 따르면 평택 험프리기지의 미2사단 본부나 전투지휘소훈련, 통신센터의 각 SCIF는 주한미군용으로 기지이전과 C4I 성능향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예산을 써야 하며 방위비분담금을 써서는 안 된다. 부산 미해군본부의 SCIF 건설은 주한미군의 C4I 성능향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군사건설비 총액의 12% 한도를 넘어 특정군사건설 사업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2009년의 한미 간 전면적인 현물지원체계로의 전환 합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군사건설사업의 전면적인 현물지급체계로의 전환(설계와 감리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 현물지급)은 그 취지가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사건설비가 미군기지이전에 쓰이지 못하게 막고 아울러 미국이 군사건설자금을 이용해 이자소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현물지급원칙을 부분적으로라도 현금지급으로 후퇴시키게 되면 집행의 투명성은 그만큼 약해지고 이자 수취나 불법적 사용도 막기 어렵게 된다.
- 주한미군이 SCIF의 기술적·기밀적 측면에서 그 건설(시공)을 만약 미국 업체에게 맡겨야 한다면 방위비분담금이 아닌 자국의 국방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도리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한국방위 임무가 상업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방위비분담금은 그 취지가 주한미군 또는 미국기업에게 영업적 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은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금지급(인건비)이라 하더라도 한국으로 환류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해 자신의 영업적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미국은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서 미국기업을 사용하여 주한미군의 건설사업 또는 군수지원 사업을 하려한다면 그에 필요한 예산은 미국 자신의 국방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① 차기 방위비분담 협상 때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려면 SCIF 건설에 불법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 2018년부터 주한미군의 SCIF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총액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이에 국회는 군사건설비가 SCIF 건설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 우리 정부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건설사업의 전면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하였다고 국회 및 국민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한미 당국은 이런 전면 현물지원체제로의 전환을 방위비분담금의 제도개선의 주요한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특정군사건설사업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이면합의의 존재는 이런 제도개선이 대외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한 서류상 제도개선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이면합의 폭로는 보여준다. 국회는 내년도 군사건설비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한국 및 미국 정부 모두에게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② 군사건설비의 불용액은 다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표2>연도별 방위비분담금 불용액 현황(단위 : 억 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불용액	12	361	168	108	19	6	8	479	60	86	109

- 방위비분담금에서 매년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2005~2016년 사이 발생한 불용액의 합계는 1,472억 원(2016년도는 56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불용액을 추후 미국이 요구하면 다시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 법적 근거로 8차 및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함께 서명한 ‘군사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7항을 들고 있다. 이 교환각서의 7항에는 “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

된다”는 규정이 있다.

- 그러나 불용액을 미국에 다시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도 어긋나고 우리 국익에 반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불용액은 주로 군사건설비에서 발생한다. 대개 불용액은 당해 회계연도에 선정된 개별 군사건설사업(현물사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사후 정산한 결과 남는(절약되는) 집행잔액이다. 즉 미국이 요청한 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는 자금은 마땅히 국고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환각서는 절약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 돈을 미국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과도하게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다.
- 국회국방위의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이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하였다”(2017년 8월 23일 전체국방위 회의).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는 불용액을 미국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교환각서 7항과 같은 불평등한 규정들을 폐지하라는 요구라 할 수 있다. 당연히 2018년에 있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는 불용액이 미국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정부는 협상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교환각서의 7항은 불평등하지만 설사 이 조항 하에서도 불용액을 미국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의 입찰차액의 계속 사용 규정이 유효한 기간은 해당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에 한정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8차(2009~2013년) 및 9차(2014~2018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그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한시적인 특별협정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협정은 폐기된다. 따라서 특별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불용액을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한국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만약 특별협정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불용액을 미국에 지급한다면 이는 한국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되므로 옳지 않다.

5. 삭감요구액

- 내년도 군사건설비 4,442억 원 전액을 삭감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 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

1. 개요

(단위 : 억 원)

소관	사업성격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 (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135	100	-35	100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 ①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 ② 내년도 예산은 캠프 캐슬, 캠프 룡, 캠프 마켓 3곳의 정화비 등에 100억 원 소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것이 국제환경법의 원칙

-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은 1970년대 초 OECD 각료이사회가 채택한 일련의 권고문을 통해 언급된 이래 1992년 리우선언의 원칙 16에서 다시 천명되었다. 또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관련 국제문서, 조약, 각국의 환경정책 및 환경규정 등에서 환경오염의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¹⁾
- 한국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이, 미국의 경우 고체 및 유해폐기물의 처분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주요 연방 법률인 ‘자원보전 및 회복법’(RCRA)과 유해물질의 정화 문제를 규율하는 주요 연방 법률인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 등이 이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1) 심영규,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2호 통권111호(대한국제법학회), 2008.8.192쪽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영토 내 군 기지의 폐쇄·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오염의 정화·치유·복원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위 2개 주요 연방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박기학,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책임에 대한 법적 시각”, 2010. 7. 22 참조)

- 나토 소파 독일보충협정(54조A2항)은 주독외국군 및 군속 당국이 독일의 환경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보충협정 서명의정서(제 63조 8② b)는 주독외국군에 의해 법적(독일환경법)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 오염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평가·치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주독외국군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민 세금으로 반환 미군기지 오염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 주권과 국익에 반한다.

- LPP개정 협정과 용산 미군기지이전 협정에 따른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모두 80곳이다. 이 가운데 2017년 현재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모두 54곳이다. 그런데 54곳 중 25곳은 국내 환경보전법 상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우리 정부가 비용을 들여 정화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비용으로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을 치유하는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환경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 불평등하고 우리의 주권이나 국익에 반한다.

③ SOFA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는 우리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현재 한미는 반환 대상 미군기지에 대해서 SOFA 공동환경평가절차서(2009. 3. 20)를 적용하여 한미 공동환경조사를 하고 위해성을 평가하여 정화기준(KISE,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 키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국 측이 자체 비용으로 조치하고 반환하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반환 미군기지의 정화기준(KISE) 해당을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환경오염치유 책임과 비용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 JEAP는 미국의 한국 환경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유해성의 판단 기준으로 KISE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KISE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의 환경보전법이 아닌 주한미군사령관의 자의적 판단이 기준으로 되고 있다. KISE(인간건강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 한국 측은 70년 동안 10만 명 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초과하는 오염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 지침에 의거하여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방부 소관 2016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017. 7, 251쪽 참조)

- 미 국방부 지침 4715.8호에 따르면 KISE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수치가 없고 지역사령관의 판단으로 KISE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즉 KISE의 해당 여부에 대해 객관적 기준이 없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주장하는 KISE는 미국의 환경법에서 통용되는 기준과도 크게 다르다. KISE는 미국 환경법인 CERCLA(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와 RCRA(자원보존과 복구법)에도 나와 있다. 이 두 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 미국 환경청의 지침서(해석)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주고 있다. “‘위험’(endanger)은 실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급박한’(imminent)은 수년 동안 그 해가 인식되지 않았더라도 환경이나 보전에 앞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치라면 긴급한 것에 해당한다. ‘상당한’(substantial) 위험은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칠 분명한 원인이 있다면 해당된다. 엄청난 위험(risk)일 필요는 없다”(박기학, 위 자료 재인용)고 되어 있다. 이런 미 환경청의 지침에 따르면 KISE에 대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정부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환경법에 따르면 KISE에 대한 주한미군의 해석은 오염치유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대한 좁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한미군이 주장한 ‘위해성 평가’ 방식에 따라 2009~2011년 사이에 7개 반환미군기지의 오염정도를 평가한 결과 단 1곳(부산 하야리아 기지)만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위해성이 있다고 평가된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오염면적이 전체 기지 면적의 0.26%인 1356㎡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KISE 기준으로 확인된, 아주 제한된 면적에 대해서조차도 치유 비용 부담을 거부하였다. 주한미군으로부터 하야리아 기지를 반환 받은 뒤 우리 정부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방식으

로 조사한 결과 하야리아 기지의 18%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우리의 환경주권이 부정되고 미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JEAP는 폐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SOFA를 개정해 우리 환경보전법 준수 의무가 규정되고 주권국가로서 우리정부의 주한미군기지 출입권 및 오염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 2017년 4월 대법원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한미소파 회의 내용을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JEAP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우리 주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 것이나 다름없다.

④ 미국이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오염치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 올해 10월 27일 부평 캠프마켓에 대한 한미의 공동환경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에 대해서 반환 전에 환경조사결과가 발표된 첫 사례에 해당된다. 이처럼 반환 전에 환경조사결과가 공표된 것은 2017년 4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주한미군이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캠프마켓의 토양에서 유해물질인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등이 검출되었고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나왔다. 특히 다이옥신류는 토양오염기준치(미국이나 독일 환경기준치)의 10배가 넘었다고 한다. 아연이나 납,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의 최고농도도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 그러나 미국이 환경조사결과를 반환 협상 중에 발표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환경오염치유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부평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KISE를 내세워 자신의 치유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 뻔하다. 더욱이 국내법상 토양 내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독일 등에서는 토양 1g 당 1000pg-TEQ 이상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캠프마켓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검출 농도 1만 347pg-TEQ는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다.

- 부평 캠프마켓 반환협상은 미국이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치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내년도 환경오염치유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아울러 국회는 우리의 환경주권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미국의 일방적 입장만 반영된 소파 환경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소파 부속문서인 JEAP를 폐기하고 우리 환경보전법을 미국이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4. 삭감요구액

- 100억 원 전액 삭감

(54) K-2 전차(2232-302)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사청	계속	3,517,902	'14~'24년	263,330	263,330

2. 방사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수적으로 열세인 북한 기갑 전력에 대해 질적 우위 확보
- ② 북한 및 주변국 위협 동시 대비 전쟁 억제력 보유
- ③ 육군 전력구조 개편 시 병력 수 감소에 대비한 질적 개선

3. 방사청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신빙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국방부의 전차전력 비교(단순개수비교방식)

- 국방부가 제시하는 단순무기개수비교방식의 남북 간 전력비교는 신빙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국방부 발표(『국방백서 2016』)에 따르면 육군 주력 무기인 전차에서 4300 : 2400 대로 북한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발표에 따르면 남북이 보유한 전차 대수는 3500 : 2418 대(『THE MILITARY BALANCE 2016』, 265~266 쪽)로 남북 간 격차가 크게 줄고 있다. 또한 1950년대에 생산된 400여대의 M-47를 '(in store)'로 분류, 이를 남한 보유 전차 대수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단순무기개수비교방식의 전력비교가 갖는 문제점은 내버려두더라도 국방부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전력비교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T-34/54/55/59 등 1930~50년대에 생산된 북한의 구형 전차들을 역시 전투 서열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방부

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의 대부분의 남북 간 전차 대수 비교에서 남한 구형 전차는 제외하는 반면 북한 구형 전차는 포함시키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② 남북 간 전차전력 비교에서 남한은 K-2를 제외하고도 질적 우위에 있다.

- 북한 보유 전차 중 비교적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00~800여 대의 T-62와 T-62 개량형으로 알려진 천마, 폭풍(선군호)뿐이다. 반면에 남한이 보유한 신형전차는 K-계열 1,584대(K1 1,000여 대, K1A1 484대, K-2 100대), 북한이 보유조차 못한 T-80전차 80여 대로 신형 전차 보유에서 북한을 압도함으로써 남한이 전차 전력에서 질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전문가는 “육군의 핵심 전력인 기갑 전력에서 북한의 탱크와 장갑차 등은 노후했을 뿐 아니라 장착 무기와 전자 장비 면에서 남한의 적수가 되지 못 한다.”(SBS, 2013. 3. 31)며 북한의 개전은 자살행위라고 평가한 바 있다.
-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2009년에 이미 K-2 전차를 제외하고도 남북 간 전차 전력 비교에서 남한이 수적으로는 열세이나 질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국방위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64쪽, 2008. 11. 11).

③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전쟁 억제력 이미 보유

-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은 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을 인용해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한 결과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 병력을 배제해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 가량 우세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신동아』, 2010. 3월호). 또한 북한의 국방비는 9.1억 달러(통일부 추산, 2013년 기준)로 남한의 국방비 368억 달러(『SIPRI 2016』)의 1/40에 불과하다. 경제력을 포함한 전쟁수행능력에서 남북 간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 군사력 측면에서만 보면 일본이 남한과 한반도를 침공할 수 없다. 일본은 미 동맹국 중에서 제6위의 지상 전력(전체 동맹국 전력의 3.59%), 남한은 제2위의 지상 전력(전체 동맹국 전력의 9.72%)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한이 지상 전력에서 일본의 무려 2.7배에 달하고 공군 전력은 거의

대등 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이 해군 전력이 앞선다고 해도 남한을 군사적으로 침공을 할 수는 없다.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the Secretary of Defence」, July 2003).

- 한 연구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지상 전투력(공군력 포함)에서 827점으로 289점의 남한의 약 2.86배(James F. Dunnigan, 『How to make war』, 2003, 627, 642쪽)로 전체적인 전력차는 전투에서의 공격 승수 3에 육박한다. 그러나 16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16,000km의 육상 국경선과 12,000km의 해상 국경선을 지켜야 하며, 티베트, 신장 등 내부 문제와 인도, 베트남, 러시아, 일본 등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남한의 지상 전력을 압도하는 지상 전력을 동원하기 어렵다.
- 한편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대북 선제공격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군을 두만강, 압록강까지 전진, 장기 배치하지 않는 한 한미연합군이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의 전차 위협에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전장 상황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의 북한 및 주변국 위협 동시 대비 전쟁 억제력 보유 주장은 전차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국방부가 억지로 꾸며낸 가상에 불과하다.

④ 이른바 ‘입체고속기동전’의 수행을 위한 전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K-2 전차는 과잉전력이며 한반도 지형 상 작전효과도 제약된다.

- K-2 전차는 기존 전차에 비해 화력, 기동력, 방호력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북한으로 진격 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력도하능력도 갖추고 있다. 군이 이러한 고성능 전차 도입을 고집하는 데에는 적 격멸과 통일 여건 조성이라는 위헌적이고 초공세적인 전략 목표 아래 공지전 교리에 입각한 ‘입체고속기동전’ 수행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북한 지역에서의 민사작전 수행 등을 위한 공세 전력을 확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군은 북한과 주변국 위협을 억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전차 전력을 구비하고 있어 K-2 사업은 불요불급한 과잉전력이다.
- 더구나 기동전은 원래 독일, 소련과 같은 평원이 넓은 전장 환경에서 발전

된 개념으로 한반도와 같이 국토 전체가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진데 따른 착잡한 격실 지형, 제한된 도로망, 국토를 횡단하는 대소의 하천 등으로 인해 기동부대의 속도가 저하되는 전장 환경으로 전차의 작전효과는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⑤ 계속되는 파워팩 결함으로 심각한 전력 손실과 예산 낭비

- 애초 군은 2010년까지 1,500 마력의 엔진 및 변속기를 장착한 국산 파워팩을 연구, 개발해 K-2 전차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산 파워팩 개발은 수차례 결함이 발견되어 개발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초도 양산 100여대에 적용할 파워팩을 독일산 파워팩으로 대체하되 국산 파워팩 사업 기간을 연장, 지속적으로 개발·보완 추진”(제63회 방추위, 2012, 12)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차 양산사업비는 애초 계약 시 8,149억 원에서 2013년 3월 수정 계약 체결 시 8,720억 원으로, 2016년 1차 양산 정산 완료시에는 9,99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어 1차 양산 초과비용만 무려 1,847억 원에 이른다.
- 2차 양산분 106대에 대해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한 계획 역시 실현될지 의문이다. 2014년에 개발 완료를 선언한 국산 파워팩은 변속기 내구도 시험평가 과정에서 6차례나 결함이 발생, 2017년 2월 이래 시험평가가 전격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K-2 전차의 생산도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1차 전력화 시기가 연장되면서 초과비용이 대폭 늘어났듯이 2차 양산 과정 역시 초과비용이 늘어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2차 양산분에 독일산 파워팩을 적용할 경우도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방사청 일각에서 제시하는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로 파워팩을 구성할 경우에도 기술입증,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다른 결함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역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이는 K-2 사업이 무리한 공세적 작전요구능력(ROC) 설정과 국내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만약 군이 ROC를 낮춰 국내 기술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첨단 기능을 갖춘 고성능 전차 도입을 고집하지 않고 기존 K1, K1A1 전차의 성능 개량에 치중했다라면 노후 전차 도태와 전력 손실을 충분히 메우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⑥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한편, 정권교체와 남북 대결 국면을 틈타 몸통이나 불리려는 육군의 집단 이기주의 발로

- 국방개혁의 핵심은 비대한 병력 축소, 군구조의 슬림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첨단기술군으로 재편하는데 있다. 육군 병력 감소에 따라 기계화 사단도 줄여야 하며 그만큼 전차 전력도 축소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후 전차를 도태시키면서도 남은 예산으로 기존 전차의 성능 개량 등 기술군으로의 재편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런데 군은 K-2 애초 전체 소요량과 총사업비를 600대, 5조 7,573억 원으로 제기했다가 200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400여대, 3조 7,283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고, 이를 다시 200대 1조 9,079억 원으로 축소(2011년)했다가 올해에는 다시 소요량과 총사업비를 400여대, 3조 5,17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방사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자료』, 487~491쪽). 이는 한반도 대결 격화와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자군 몸통이나 늘리려는 육군의 집단이기주의가 발로된 것으로 국방개혁에 기여한다는 군의 주장은 지극히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K-2 사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군의 무리한 작전 목적과 소요 제기, 국내 기술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과정을 밟지 않은 채 무조건 예산이나 많이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데 원인이 있으며, 이를 방치하고 예산을 승인한 국회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가 또 다시 K-2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국민 혈세의 낭비로 국회도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2018년 K-2 전차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K-2 전차 사업을 축소함으로써 육군의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5. 삭감 요구액

- 2,633억 3천만 원 전액 삭감

(100)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사청	계속	3,917,100	'14~'28년	213,087	213,087

2. 국방부(방위사업청)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성능

- 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북 전면전 및 주변국과 해양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대왕급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향상된 이지스급 구축함을 국내 건조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
- ② 최신 이지스급 함정 확보를 통해 북의 위협으로부터의 국민안전 보장 및 주변국으로부터의 해양 주권 수호 가능
- ③ 탄도탄 대응에서는 전투체계 성능 개선으로 탄도탄 요격 기능 추가와 탐지·추적거리, 동시 추적, 추적 속도 등 대응 능력이 Batch-1 대비 약 2배 향상됨. 또한 대잠작전에서 심도 조절 가능한 저주파 대역의 음파탐지기를 추가(1대) 탑재해 적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향상될 것으로 예상.(방위사업청, 광개토-III Batch-II 탐색개발 사업 계약 체결 보도자료, 2016. 6. 24)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이지스함의 추가 도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은 허구

-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임호영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도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북한

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 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상당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17. 9. 9)

<남북 미사일 전력 비교>

남한				북한			
종류 ¹⁾	사거리	수량	비고	종류 ²⁾	사거리	수량	비고
현무-1	180~250km	500 ³⁾	탄도 미사일	KN-02 ⁵⁾	120km	100	탄도 미사일
현무-2A	300km	45 ⁶⁾		스커드 B ⁷⁾ (화성-5)	300km	600-800	
현무2B	500~800km			스커드 C ⁸⁾ (화성-6)	500km		
현무 2C	800km			스커드 ER ⁹⁾ (화성-7)	1000km	수 기	
현무 3A(천룡 1)	500km	800~ 1700 ⁴⁾	순항 미사일	노동 ¹⁰⁾	1300~	200-300	
현무 3B(천룡 2)	1000km			무수단 ¹¹⁾	4000km	20~30	
현무 3C(천룡)	1500km			대포동 ¹²⁾	~10000km	10	
현무 3D/4	3000km			개발 중	KN-08/14 ¹³⁾	~11500km	
ATACMS 블록 I	180km	111 ¹⁴⁾		KN-11 ¹⁵⁾	1200km	개발 중	SLBM
ATACMS 블록 IA	300km	110 ¹⁶⁾		화성-14	10000km~	개발 중	
				화성-12	4500km		
				금성-3 ¹⁷⁾	130~250km		지대함 순항
소계		1,021~1,921		소계		1,000~1,300	

1)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south-korea/>
 2)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dprk/>
 3) 세계일보, 2015.6.3
 4) 탄도와 순항을 통틀어 현무 미사일 800기 보유. 2017까지 개량 현무2, 3 900기 추가 보유, 1,700기 무장 예정. 2018~2020년 300기 추가 생산, 모두 2000기 확보 예정 (SBS, 2016. 1. 25)
 5)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n-02/>
 6) 세계일보, 2015.6.3
 7)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hwasong-5/> 국방부, 『2016 국방백서』 등 참조
 8)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hwasong-6/> 정규수, 『ICBM, 그리고 한반도』 등 참조
 9)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hwasong-7/>
 10)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no-dong/>
 11)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musudan/>
 12)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taepodong-2/>
 13)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n-08/>, 미국방부 의회보고서,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PRK 2013』 등
 14) 세계일보, 2015.6.3
 15)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n-11/>
 16) 세계일보, 2015.6.3
 17)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umsong-3-kh-35-variant/>

- 이지스함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방어중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 지형 상 2~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방사청이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이지스함 장착 SM-3 요격미사일은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 요격용으로 정점 고도가 대부분 내대기권에서 형성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할 경우 주로 사용하게 될 탄도미사일은 KN-02(사거리 최대 160km), 스커드 B(사거리 300km), 스커드 C(사거리 500km)인데 이들의 최고 고도는 각각 40km 내외, 90km 내외로 SM-3 요격미사일의 최저 요격 고도보다 낮으며, 정점 고도가 150km에 이르는 스커드 C도 정점 고도를 지나 SM-3의 100km 최저 요격 고도까지 비행하는 시간이 불과 1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SM-3로 요격하기 어렵다.
- 설령 북한이 사거리 1000~1300km의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여 남한을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기만체나 추진체 파편을 이용하거나 회피기동을 하거나, 여러 기를 대량 발사하면 이를 탐지, 식별해 타격하기 어렵다.

② 남한은 해군 전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어 예산 낭비

- 남한은 해군력에서 대북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남한 해군력은 총톤수에서 21.3만 톤으로 북한 10.4만 톤의 2배가 넘는다(『일본 방위백서 2017』). 더구나 남한은 구축함을 12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일본 방위백서 2017』).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국지전에서 현재의 전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형 구축함 3척을 추가로 도입하는 광개토-III Batch-II 사업은 불필요하다.
- 특히 “북한 해역은 동·서로 분할되어 해군의 융통성 있는 작전이 어렵고, 전력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해 작전 능력이 제한”(『국방백서 2014』) 되어 작전에서 보유 전력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 한편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연근해 작전을 위주로 할 남한 해군에게 8,000톤이나 되는 대형 함정은 불필요하며 예산 낭비일 뿐이다.

③ 주변국과 해양 분쟁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위험성

- 독도와 이어도 등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군비경쟁과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상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일본이 이를 군사력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한일 간 전쟁을 상정하는 것인데, 이는 현 정세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중국,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하여 해양 법상 ‘수중 암초’로 공해다. 섬이 아닌 ‘수중 암초’는 접속수역, 영해, EEZ, 대륙붕 같은 해양수역을 창설할 수 없어 한 국가의 영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만일 한·중·일이 이어도에서 관할권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외교와 협상이 아닌 이지스함 등 대형 함정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은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설령 물리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아니라 해경이 나서야 할 문제다.
- 그런데도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수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대형 함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중일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군비경쟁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GDP가 각각 11조 3,916억 달러, 4조 7,303억 달러로 1조 4,043억 달러에 불과한 남한의 8.1배, 3.3배에 달한다.(2016년 기준) 국방비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2,151억 7,600만 달러, 461억 2,600만 달러로 367억 7,700만 달러의 남한의 5.8배와 1.2배에 달한다(SIPRI, 2016). 한국은 중국, 일본과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④ 미국 MD에 편입되어 대중 미일 MD 작전에 동원될 위험성이 매우 커

- 광개토-Ⅲ Batch-Ⅱ는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 레이다 등 미국의 다른 MD 체계와도 통합 운영이 가능해 이의 도입은 한미일 통합 MD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
- 한미일은 이미 자국의 이지스함을 동원하여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경보훈련을 하와이 인근과 동해, 남해 등에서 실시하였다(Pacific Dragon 훈련). 최근에도 울곡 이이 이지스 구축함이 미 해군 스테덤함과 디케이터 이지

스 구축함, 일본 해상자위대 키리시마 이지스 구축함이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 별로 탐지·추적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을 전개하였다(2017. 10. 24, 노컷 뉴스). 남한 이지스함이 이미 미일을 위한 MD 작전에서 탐지, 추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이 SM-3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한국 이지스함은 주로 미일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한국 이지스함이 남한 방어에 효용성도 없거니와 동북아 MD 작전을 통제할 미군이 미 본토 방어와 일본 방어를 우선으로 한미일 MD 무기체계들을 할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한국, 일본, 미국이 무기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한국의 SM-3 도입과 미일 MD 작전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한 우리 무기체계가 유사시 미일 방어 작전에 동원되는 셈이다.
- 한편 문재인 정부가 10월 30일, 미 MD 편입을 부정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실상 미일 MD 무기체계로 될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른 도입으로 국익 훼손 우려

- 광개토-III Batch-II에 탑재할 전투체계는 미 이지스체계로, 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국무부의 판매 승인을 발표하고 관련 장비까지 포함한 총판매 금액이 19억 1천만 달러(약 2조 1천 4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2015. 6. 10) 그런데 FMS 방식은 미국의 판매 절차와 조건에 따라 구매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제도(FMS)와 해외 무기획득사업의 과제’(2012)에서 “미국은 FMS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구매국이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FMS 주요 계약조건인 가격, 납기 등에 있어 일방적으로 변경을 통보하더라도 구매국이 손실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계약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FMS 방식은 미 정부에 각종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의 추가 낭비가 예상된다.

- 한편 요구 성능과 절충교역 등 록히드 마틴사와의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사업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
- 한 기에 약 230억 원을 호가하는 SM-3(엄현성 해군총장, 2017. 10. 19)를 도입하는 경우, 48기만 도입해도 1조 1,04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4. 결론

-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목적이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미 MD에 가입하고 대중 포위 전략에 동원될 위험성이 커 국가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의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5. 삭감 요구액

- 이에 2018년도 예산 2,130억 8,7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어야 한다.

(123)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2432-308)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사청	계속	6,052,100	'12~'24년	609,434	609,434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 ① 군이 운용중인 현용헬기(UH-1H, 500MD 기본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전력으로 한국형 기동헬기를 확보하는 사업
- ②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되고, 기동성 및 생존성이 향상된 주/야간 작전수행 능력을 보유한 한국형 기동헬기 확보 필요
- ③ 최초 국산헬기 양산을 통해 국내 항공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노후 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이 우려되어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의 허구성

- 남한의 헬기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이라도 690여 대를 보유한 남한은 불과 290여 대를 보유한 북한에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한이 보유한 UH-60, M/CH-47, 수리온 등 340여 대의 다목적 헬기는 북한이 보유한 Mi 2/4/8/17/26과 500D 등 286여 대의 소형 다목적/지원(기동, 수송, 탐색·구조) 헬기보다 수송 능력과 항속거리, 보유 대수에서 일방적 우위에 있다. 따라서 노후 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 없다.

구분	북한		한국	
	Mi-2	Mi-4	UH-60	M/CH-47
수송능력	800kg/8명	1,740kg/11명	3,630kg/11명	12,000kg/40명
항속거리	170km	250km	600km	1,207km

<『북한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평가 보고서』, 한국국방안보포럼, 2010.10>

- 또한 일반적으로 헬기나 전투기 등 항공기의 노후화는 사용 연한이 아닌 운용시간으로 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헬기의 기준수명과 운용수명을 넘기더라도 실제 운용을 적절히 조절해 헬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도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전력 공백 문제도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KMH 개발 불구 노후 헬기 문제 심각’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4. 1. 14)
- 국방부가 도태 대상으로 제기하는 500MD는 운용시간이 약 2만 시간이지만, 우리 군의 500MD 운용시간은 평균 5000~7000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방산 현장을 가다 ⑪, ‘창문도 계기판도 없는 대한항공 500MD 무인 헬기…'새 먹거리로 주목''」, 조선 비즈, 2017. 4. 3)
- UH-1H의 제조사인 벨(BELL)사는 UH-1H 헬기의 기체수명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무제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육군 항공기 정비 단 민영화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향」, 항공우주정책연구원, 2012. 1. 10)

②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는 헬기의 작전운용에 적합하지 않다.

- 기본적으로 헬기는 공격용 헬기든 다목적/지원 헬기든 자체 방호력이 취약하여 상대방의 지대공 공격에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산악지형이 80%에 달하는 한반도에서, 특히 북한의 지대공 요격 능력을 고려할 때 우리 군 헬기의 생존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2001년에 미국의 보잉사가 한반도에서 공격 헬기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위게임에서 아파치는 100% 격추당했다.

③ 성능 결함과 방산비리로 얼룩진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은 경제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혈세낭비만 초래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수리온 전력화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헬기 개발은 첨단 과학기술의 총화로서 수리온 개발과 생산을 통해 약 12조 원의 산업 파급 효과와 5만 여 명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15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리온의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계획서'에는 Batch 0~4 부품 135개가 체계 개발 완료 시점인 2012년 6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개발 완료하게 돼 있으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소극적인 사업관리 및 국제공동개발의 국내외 참여업체 간 의사소통 부재 및 상호협력 미비로 인하여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계획은 실패했고 이로 인해 156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의 기술이전 협의도 없이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를 추진하다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승인을 거부당해 18억여 원의 소프트웨어 설계비도 낭비했다고 밝혔다.
- 또한 감사원은 2017년 7월 16일, '한국형 기동헬기 비행 안전성 등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위사업청이 수리온의 체계 결빙 성능을 보완하지 않은 채 납품을 재개함으로써 "체계 결빙 규격 적용이 부당하게 유예되어 해당 기간 지체상금(약 4571억 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개선비용(약 207억 원)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엔진 등 결함에 대한 후속 조치 태만으로 4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엔진 교체로 24억 원, 수리온 자체 불용처리에 따른 194억 원 등 손실 발생으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④ 성능결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수리온은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능 결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과 육군이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

이다.

- 2016년 3월, 수리온의 체계 결빙 성능시험 결과 엔진공기흡입구에 엔진 유입 허용량을 초과하는 얼음이 발생하는 등 수리온 감항인증기준 결빙과 관련한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자 방위사업청은 2016년 8월 수리온의 납품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 결빙 현상을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약속만 믿고 납품을 다시 재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이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군 당국을 앞장서서 설득했고, 특히 결빙 성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규격을 변경할 수 없는 '안전 관련 사항'임에도 KAI가 2016년 12월 규격 변경을 제안하자 '일반사항'으로 변경해 주었다.
- 또한 방위사업청은 당초 수리온의 감항 기준을 미국 연방항공청의 감항인증기준인 'FAR 29'(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기술 기준)를 기반으로 한 '수리온 감항인증기준'을 수립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일정과 비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일부 항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준을 완화했다. 감항인증에서 제외된 항목이 바로 현재 수리온에 기술적 결함으로 꼽히고 있는 체계 결빙과 엔진 형식이다.
- 2014년 8월, 수리온 16호기가 활주 이륙 도중,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기체에 설치된 전선절단기의 충돌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은 원인 분석 및 후속조치를 약속했지만, 설계변경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용자 교범'만 수정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한국형 기동헬기의 성능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본적 해결 없이 한국형 기동헬기를 양산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불러와 군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한편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수리온 운용·유지상 주요 문제점>

문제점	내용	
	발생횟수	원인 및 진행 경과
방빙 장치 관련 엔진 결함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빙 장치 고열로 인한 공기흡입 유도깃 레버가 고착 - 엔진 교체(2EA), 4호기 추락으로 대파
중앙 동체 프레임 크랙 발생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동 흡수기 장착을 위해 보강한 더블러 끝단 장착 부에서 응력 집중과 반복된 하중으로 하부 프레임에 균열 발생 - 비행 안정성 및 원인 검토 후 추가 후속조치 예정
윈드 실드 파손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착륙 또는 상공 비행 시 윈드 실드 파손
주회전 날개와 전선절단기 충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주 이륙 도중에 주회전날개와 전방 동체 상부에 부착된 전선 절단기 충돌 사고 발생
기체 내부 빗물 유입	모든 호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체 결합 불량 또는 외부 환경 노출에 따른 실런트 마모 등 추정 - 생산 단계 실링 작업 보완 및 검사 강화 추진 중
유압변환기 작동 불량 및 타이어 파손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업체(이탈리아의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유압 변환기 조립 공정 불량으로 추정, - 조립 검사 공정 강화, 수락시험절차 강화 등
착륙 보조장치 조기 마모	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륙 보조 장치 지면 마찰로 조기 마모 발생 - 마모방지패드 장착 예정
매인 컴퓨터 부팅 실패	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내부 펌웨어(Firmware) 오류 - 부팅 시 내부 타이밍(Timing)이 최소 100ms 필요하나 1ms로 설정됨
화물 인양 고리 작동 시 기체 간섭	2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인양 고리 사용 시 교범에 명시된 운용범위 (30°)를 초과하여 기체 간섭 발생
충돌 방지등 작동 불량	2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 방지등 미점등 및 간헐적 미점등, 충돌 방지등 점멸 불가능 - 전원공급기 회로카드 재설계 필요
연료량 표시장치 에러코드 시현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EMI/EMC 시험 시 신호처리장치(SCU) 및 연료량 측정막대(Probe)간 알루미늄 호일을 적용하여 부적합한 EMI/EMC 시험 실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보고서』, 감사원, 2016. 10)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성능 결함과 지속적인 사고 발생으로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한국형 헬기 도입 사업은 성능 결함이 완전히 보완되기 전 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수리온 사업은 남한의 헬기 전력을 감안할 때 각종 성능 결함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 조종사의 안전 문제 등을 도외시 한 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이 결코 아니다.

5. 삭감요구액

- 이에 2018년 한국형 기동헬기 예산 6,094억 34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164) 패트리엇 성능 개량 사업(2533-308)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사청	계속	13,737.82	'14~'21년	375,500	375,500

2. 방사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 방어 능력 향상.
- ② 적 탄도유도탄 직접 요격(Hit-To-Kill)을 위해 PAC-3 에린탄을 구매하고 기 도입된 PAC-2 장비(레이더, 통제소, 발사대 등)를 PAC-3 (Configuration-3)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
- ③ KAMD 적기 구축 가능 및 한미연합작전 능력 향상.

3. 방사청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한반도에서는 종말 하층방어체계 구축이 불가능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지 불과 3~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탐지→식별→추적→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는 중심이 매우 짧아 PAC-3 등의 요격체계에 의한 종말 하층단계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2010~2012년)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패트리엇 개량 사업은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일 뿐이다

② PAC-2, PAC-3의 요격 능력 미지수

-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국방장관 코언은 걸프전(1991년)에서 PAC-2의 요격 성공률이 44발 발사에 0%였다고 밝힌 바 있다('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2010. 11). PAC-2 탄두의 근접신관 개량과 유도 레이더와 센서 등의 개량이 이루어진 이라크전(2003년)에서도, 미 육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격율은 40%를 밑돌았다.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걸프전 때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고 속도도 늦어(Kinetic Energy Kill for Ballistic Missile Defence : A Status Overview, CRS Report, 2007. 1. 5) 그나마 요격 가능성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격율이 40% 미만이었다는 것은 PAC-2, PAC-3의 성능 개량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 육군은 걸프전 때도 PAC-2 요격율을 70%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렸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PAC-3 요격률이 70%라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③ 방어지역 매우 협소

- PAC-3는 방어 범위가 30Km 미만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다. 이는 PAC-3 도입 등 종말 하층방어에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은 불과 몇몇 주요 정부 기관이나 군사 시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민간인들이나 핵발전소를 포함한 민간시설들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한미군이나 일본 자위대처럼 PAC-3 MSE를 도입해도 마찬가지다.

④ 감당할 수 없는 예산 부담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표를 군사시설, 항만, 비행장 등 주 전략 지역 30 곳-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27~36기로 추산, 이에 동시 공격이 가능한 지역을 27~36개 지역-으로 제한하더라도 최소 30개 포대, 180기의 발사대와 약 3,000발의 요격미사일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8,000 여명의 병력과 시설 보호를 위해 2개 대대, 12개 포대(72기)를 수원, 오산, 군산, 대구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일부 장비를 PAC-3 MSE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이에 60만 한국군과 주

요 시설들을 방어하는 데는 30개 포대, 180기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다. 이에 대한 비용은 PAC-3 탄 비용만 최소 10조 원 이상(발 당 탄값 약 35억 원, 2012년도 미군 도입가, 한국군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에 구매하게 될 것임), 발사대, 레이더, 통제소 등 장비 추정가 최소 6조 원 (PAC-2 도입가 적용 시, PAC-3는 2배 이상) 등 16조 원 이상으로 1년간 방위력 증강 사업비 10조 원의 1.5배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다. 미국이 대만에 제공한 ERINT탄 가격(2008년) 930만 달러를 적용하면 1년 국방 예산에 이른다(「Taiwan : Major U.S Arms Sales Since 1990」, 2012. 11. 29).

⑤ 비용 대비 효과 매우 낮아

-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대 600~800여 발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약 100만 달러, 10억 원 추정)을 요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패트리엇 도입 비용만 적용하더라도, 최소 약 200억 원에 달한다. 이토록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에 수십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⑥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 이 사업은 2020년까지 국내 개발하기로 한, PAC-3와 비슷한 성능의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다. 철매-II 요격미사일(약 11억 원 추정)은 PAC-3 ERINT탄(2008년 대만 제공 가격)에 비해 1/8 정도로 훨씬 싸다. 따라서 성능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PAC-3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만약 국방부가 철매-II 개량 성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PAC-3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50조 3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요구된다.

⑦ FMS 방식의 구매에 따른 불이익 감소

- FMS 방식의 구매는 단지 PAC-3 에리트탄 구입뿐만 아니라 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다른 모든 미국 무기 구매에서도 가격, 납기 기한,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절충교역, 계약 불이행 시 지체상금 부과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PAC-3 에리트탄 구입 과정에서도 한미 간에 초입금 규모와 대금 지불 일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비용 대비 효과도 매우 낮은 PAC-3 에리트탄 도입과 PAC-2의 성능 개량을 위해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작전적 효용성과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고, FMS 방식의 도입으로 국익 훼손이 불가피한데다 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패트리엇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5. 삭감 요구액

- 3,755억 원 전액

(175) 철매-Ⅱ 성능 개량(2532-339)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사청	신규	1,061,430	'17~'22년	60,827	60,827

2. 방사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 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을 성능 개량하여 대 항공기 및 대 탄도탄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대공유도무기를 양산하는 사업.
- ②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KAMD 구축.

3. 방사청 주장의 문제점

① 달성 불가능한 사업 목표(1)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3~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탐지→식별→추적→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이 공동 실시한 연구(2010~2012년) 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방어중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철매-Ⅱ 개량 사업은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일 뿐이다.

② 달성 불가능한 사업 목표(2)

- 철매-II를 Hit-To-Kill 방식의 탄두를, 그것도 불과 몇 년 안에 성능 개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MD 기술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미국도 Hit-To-Kill 방식의 탄두를 개발하기까지는 30여 년이 걸렸다. 방사청은 작전운용 시험 평가에서 5차례 요격에 성공(조선닷컴, 2017. 6. 19)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처럼 표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시켜 놓는 방식의 요격 실험일 가능성이 커 실전에서 요격이 성공할 지는 미지수이다. Hit-To-Kill 방식의 탄두를 운용 중인 미국도 이를 입증한 바가 없다.
- 한편 PAC-3 요격률이 70%에 이른다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 없다. 걸프전 당시 PAC-2의 요격율은 0%였으며('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2010. 11), 탄두의 근접신관 개량과 유도 레이더와 센서 등의 개량이 이루어진 이라크전에서도, 미 육군의 보고에 따르면, 요격율은 40%를 밑돌았다.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도 사거리도 짧고 속도도 늦어(Kinetic Energy Kill for Ballistic Missile Defence : A Status Overview, CRS Report, 2007. 1. 5) 그나마 요격 가능성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40% 미만의 요격율에 그친 것은 PAC-2 성능의 한계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미 육군은 걸프전 때도 PAC-2 요격율을 70%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렸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PAC-3 요격률이 70%라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③ 협소한 철매-II 방어의역

- 철매-II의 성능 개량에 성공하더라도 철매-II는 방어 범위가 30Km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철매-II를 도입하자면 이를 통해 방어할 수 있는 곳은 몇몇 주요 정부 기관이나 군사시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핵발전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민간시설과 민간인들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④ 감당할 수 없는 예산 부담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표를 군사 시설, 항만, 비행장 등 주요 전략, 작전 지역 30 군데-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27~36기로 추정되며, 이에 동시 공격이 가능한 지역을 27~36개 지역-로

한정하더라도 최소 30개 포대, 180기의 발사대와 약 3,000발의 요격미사일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 8,000여 명의 병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개 대대, 12개 포대(72기)를 수원, 오산, 군산, 대구 등에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 60만 병력과 주요 군사시설만 보호하는 데도 30개 포대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다. 30개 포대를 모두 철매-II로 충당할 때 소요 비용은 탄값 최소 3조 원 이상(발 당 탄값 약 11억원, 김성걸 박사학위 논문 214쪽), 발사대, 레이더, 통제소 등 장비 도입 추정가 최소 6조 원(PAC-2 도입가 적용 시) 등 모두 9조 원 이상으로 1년간 우리나라의 방위력 증강사업비 1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⑤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

-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은 PAC-2 도입 사업, PAC-2의 PAC-3로의 성능 개량 사업, PAC-2탄 도입 사업과 GEMT탄으로 성능 개량 사업, GEMT탄 직도입 사업, PAC-3 에리트탄 직도입 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과 중복된다. 이들 중복 사업비용으로만 이미 2조 원 이상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최소 2조 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하여 양산을 막는 것이 그나마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다른 중복 사업들도 통폐합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거나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다.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50조 3항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⑥ 정부 스스로 불요불급한 사업임을 입증함

-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은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을 돌연 중단시킨 것으로 보도(뉴시스 1, 2017. 10. 30)되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 소요와 또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함으로써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국방부의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입장 선회 이유가 공세무기의 도입을 위해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철매-II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이를 PAC-3로 대체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KAMD 구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연구, 개발비로 이미 1.619억 원이 들어가고, 도입비와 운영유지비 등도 PAC-3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예산 절감이 가능한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철매-II의 신뢰성이 매우 낮거나 성능 개량 사업이 불요불급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듯 중단될 수도 있는 사업, 그것도 총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비용 대비 효과도 낮으며, 달성 불가능한 사업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요소가 큰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을 전면 철회시켜야 한다.

5. 삭감 요구액

-608억 2,700만 원 전액

(131)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R&D)(2531-314)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안(B)	삭감 요구액
방사청	계속	10,971,93	15~23년	93,789	93,789

2. 방사청이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 ①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KAMD 구축.
- ② 다층방어 개념의 탄도유도탄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보다 높은 고도에서 Hit-To-Kill 요격체계 연구 개발 필요.
- ③ 탐색 개발 완료 후 다층방어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대 요격고도 ROC 변경 검토(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요지)

3. 방사청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대 국민 약속 파기

- L-SAM 사업은 종말 상층(중·고고도) 단계 내·외기권(고도 40~60Km)에서 북한과 중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MD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평통사가 국방부에 전화로 문의(2015. 10)한 결과 L-SAM의 요격 고도를 40~150Km로 확인해 준 바 있다.
- 그런데 국방부는 그 동안 누누이 종말 상층·고고도 MD 체계를 개발,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201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언론이

한국의 미국 MD 가입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도 국방부는 “한반도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방어 MD보다는 하층방어 MD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우리 군은 상층방어를 위한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2013. 5. 8)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이미 사드 부지를 조사하고 다닐 때조차 “현재로서는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연합뉴스, 2014. 5. 29)며 상층방어체계의 도입을 부정했다.

- 그러나 이제 L-SAM 사업을 통해 종말 상층·고고도, 내·외기권 요격체계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상층방어체계를 도입하지 않겠다던 국방부의 대 국민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국방부는 L-SAM이 종말 중고도(40~60Km) 요격체계로 상층요격체계가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요격 고도 60Km 이상의 체계는 사드처럼 (종말)상층요격체계로 분류된다. 더구나 L-SAM을 요격 고도 40~150Km로 개발한다면 더더욱 상층·고고도 요격체계에 해당한다.

② 사업 변경 가능성

- 국방부가 L-SAM을 종말 고고도(80Km 이상)와 외대기권(100Km 이상) 요격이 가능한 체계로 개발하리라는 것은 거의 필연이다. 이는 한국을 겨냥한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 곧 종말 고고도 또는 종말 상층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다. 국방연구원이 L-SAM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탐색 개발 완료 후 최대 요격고도 ROC의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 대결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동북아 유사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성주 사드 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나 한국군 기지 등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L-SAM의 요격 고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변경을 하게 되면 개발 비용은 더욱 상승하게 되고, 개발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러나 개발 성공 가능성은 그 만큼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 한편 L-SAM의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신뢰성이 낮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방부가 최근 개발에 성공(?)했다는 M-SAM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듯이 L-SAM 사업 중단도 고려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L-SAM 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언론 보도대로 Kill Chain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

세무기의 도입에 사용하거나 한국군 이지스함에 SM-3를 장착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1조 원이 넘는 연구, 개발 비용은 순전히 낭비로 된다.

③ 효용성이 매우 낮아

- L-SAM은 종말 상층방어체계로, 상층방어체계는 국방부의 주장대로 한반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L-SAM은 요격 고도 40~150Km의 종말 중·고고도 외, 내 대기권 요격 체계로 노동미사일과 같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적합하다. 그러나 L-SAM의 주 요격 대상은 북한 보유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방어중심이 지극히 짧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상층(중·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도 낮아 L-SAM의 요격 고도 아래에서 형성되거나 요격 고도 위에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요격이 가능한 고도 아래로 하강해 버림으로써 요격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 이에 종말 상층체계 도입을 찬성하는 자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종말 상층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를 견제할 목적에서 일본이나 오키나와를 타격하기 위한 체계로, 북한이 남한 공격에 보다 효용성이 높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나두고 굳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설령 일부의 주장대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노동미사일의 탄두가 기만체나 추진체의 파편과 함께 날아오게 되면 탄두와 기만체 또는 파편을 식별할 수 없어 요격이 불가능하게 된다. 사드 체계가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 갖게 되는 난제를 L-SAM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다만 L-SAM의 요격고도가 40~60Km일 경우에는 기만체나 추진체 파편으로부터 탄두를 구별해 요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탄두가 낙하하면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는 등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아 요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조정하여 40~60Km의 요격 고도를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을 함으로써 L-SAM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에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상층·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L-SAM 개발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④ 다층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사업 목표는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

- 다층방어 개념은 방어 대상과 지역에 따라 전혀 실효성이 없는 허구적인 것으로 된다. 패트리엇과 같은 종말 하층방어체계는 그 방어 면적이 매우 협소해 예산 허용 범위에서 하층방어체계를 구축하면 결코 모든 도시와 시민을 방어할 수 없다. 일부 주요 정부 기관이나 군 시설을 방어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를 방어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 또한 L-SAM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요격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요격 고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처럼 수도권에서는 무용지물이며,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다층방어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과 남한군의 70% 이상, 그리고 정부 기관 과 기업체 등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다층방어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층방어를 위한 L-SAM 개발이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 한편 다층방어체계는 적어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했을 경우 다시 하층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나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고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고고도나 중고도에서 요격하고, 다시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식의 다층방어체계는 양자 사이의 요격 고도와 시간차가 매우 짧아 성립하기 어렵다. 종말 고고도나 상층에서 요격 실패를 확인한 후 하층에서 다시 요격을 시도할 만한 시간 여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다층방어체계의 개념이 한반도에서처럼 상층체계의 요격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상층체계와 거의 동시에 하층체계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을 시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 최소 2배 이상의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PAC-3 요격미사일은 한 기에 10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데, 이러한 요격미사일을 2배로 이상이나 도입하는 데는 적어도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⑤ Hit-To-Kill 요격 체계 개발이라는 사업목표 달성 불가능

- 국방부는 L-SAM 체계의 요격미사일을 Hit-To-Kill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Hit-To-Kill 방식을 불과 몇 년 만에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Hit-To-Kill 방식은 미국만이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개발에 걸린 시간도 30년을 헤아린다. 그런데도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도 없이 독자적으로 불과 8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특히 PAC-3에 비해 사드의 Hit-To-Kill 방식은 개발 과정에서 보다 큰 어려움에 부딪혔으며,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개발 성공을 입증한 사례가 없다.

⑥ 중국 등 주변국 탄도미사일 위협 대비라는 잘못된 사업 목적

- 국방부가 상층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는 북한보다는 대중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대중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곧 한중 적대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 등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군사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며, 이는 미군 사드 배치로 현실화되고 있다.
- L-SAM 개발도 사드와 마찬가지로 중국 탄도미사일을 종말 고고도나 상층에서 요격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 MD에 가입하지 않고, 그 결과 대중 적대적 관계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L-SAM 개발은 불필요하다. 이렇듯 L-SAM 사업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편승하려는 잘못된 국가안보전략의 파생 사업이다. 결국 L-SAM 사업은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이다.

⑦ 대미 군사적 예측 확대 심화

- 한국이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 체제에 참여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 MD 전초기지로 전략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은 L-SAM

의 개발을 넘어서 대중 MD 작전에서 보다 큰 성능을 발휘할 사드, 나아가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까지 강요받게 될 것이며, 이 또한 현실로 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MD 정보, 요격작전 등에서 미국에 전면 예측될 것이며, 작전통제권 환수도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⑧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 가능성 커

- 한국이 러시아 기술을 지원 받아 철매-II를 개발했으나 이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으며, 따라서 이를 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려는 철매-II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신뢰도 또한 매우 낮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PAC-2의 PAC-3로의 성능 개량과 PAC-3탄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PAC-2 도입 비용의 상당 부분과 철매-II 개발 비용 등 수조 원의 예산이 이미 낭비되었다. L-SAM 개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L-SAM을 개발한다고 해도 신뢰성이 낮거나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군도 사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L-SAM 개발과 생산비 등 수조 원의 예산이 중복 투자로 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이렇듯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효용성이 없으며, 대중 적대 관계를 전제한 잘못된 사업 목적과 Hit-To-Kill 개발이라는 달성이 불가능한 사업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양산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폐기되어야 한다.

5. 삭감 요구액

- 937억 8,900만 원 전액

(178)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 CBU-105(2533-303)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사청	완료	2,380,15	' 12~' 18년	13,676	13,676

2. 국방부(방위사업청)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 ① 적 전차/장갑차 무력화하기 위하여 F-16, KF-16 및 FA-50 기종에 장착하는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CBU-105)을 국외구매(FMS)로 확보
- ② 공군의 적 전차, 장갑차에 대한 타격 능력 향상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북한의 전차/장갑차 무력화는 남한의 전차/장갑차 전력이 압도적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도입의 근거로 되지 않는다.

- 국방부는 북한의 전차/장갑차 무력화를 위해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군은 이미 북한의 기갑전력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은 과잉 전력일 뿐이다.
- 북한 보유 전차의 대부분은 T-34/54/55/59 등으로 1930~50년대에 생산된 구형 전차들이고, 비교적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00~800여 대로 추정되는 T-62와 T-62 개량형으로 알려진 천마, 폭풍(선군호)뿐이다.

반면에 남한이 보유한 전차는 대부분이 신형 전차로 K-계열의 전차 1,584대(K1 1,000여 대, K1A1 484대, K-2 100대)와 북한이 보유조차 못한 T-80 전차가 80여 대로 전차 전력에서 북한의 전차 전력을 압도한다.

-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미 2009년에 K-2 전차를 제외하고도 남북 간 전차 전력에서 수적으로는 남한이 열세이나 질적으로는 남한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국방위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64쪽, 2008.11. 11)
- 뿐만 아니라 육군은 북한 기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대형 공격헬기(AH-64E)를 2016년부터 실전 배치하여 2017년 말까지 36대(1조 9,000억 원)를 도입하기로 했고, 북한군 탱크를 일거에 파괴할 수 있는 국산 대전차 미사일‘현궁’도 2017년 6월 실전배치 되어 10월부터 전 부대로 보급될 예정이며, F-15K와 KF-16에 장착된 공대지 미사일 등 남한은 북한의 기갑전력에 대응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 따라서 북한의 전차/장갑차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CBU-105)을 도입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② 확산탄은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인도적 불법 무기다.

-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며 그 중 41%가 어린이일 (『Cluster Munition Monitor 2017』, 2017. 8.13, Cluster Munition Coalition) 정도로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반인도적 무기이다. 넓은 지형에서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인 확산탄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군사적 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 2008년 사용·생산·비축·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확산탄 금지조약이 채택되고 2010년 8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2016년 현재 총 119개국이 확산탄 금지조약에 가입했고, 이 중 100개국이 비준까지 마쳤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29개국은 조약 내용에

따라 140만 개의 비축분과 172개의 자폭탄을 폐기 처분했다. 2015년 예멘에서 확산탄을 사용한 사우디에 확산탄을 공급한 미국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2016년 5월 미국 국방부는 사우디에 확산탄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6월 미 의회에서 사우디에 확산탄을 공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 한국이 확산탄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 생산, 수출, 수입 및 저장, 사용이 합법이라 할 수 없다. 국제 인도법의 관습은 불법한 현상의 규정은 비가입 당사국의 행위에도 규정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확산탄 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이재승, 2010. 10. 16)
- 국방부는 대북 방어를 위해 확산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확산탄은 기본적으로 대량살상 공격용 무기이며 확산탄이 없더라도 대북 방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세계의 절대 다수 국가가 확산탄 금지조약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확산탄이 없이도 각기 자국을 방어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 한편 한국이 확산탄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대북 방어를 위해 확산탄을 국외에서 구매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확산탄 관련 2018년도 예산>

No.	구분	항목	내용	예산액
1	K-9 자주포	육군	DP-ICM BB탄두(K310활성)	127,495.45백만원
2	전투예비탄약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2.75 다목적분산탄(MPSM)	6,125백만원
3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155밀리 DP-ICM BB	84,078백만원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40밀리 이중목적고폭탄	8,649백만원
4		해병 전투예비탄약사업	155밀리 DP-ICM BB	1,893백만원
5	230mm급 차기다련장	육군	유도분산탄	64,787백만원
6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해군		14,400백만원
7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해군		6,245백만원
8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			13,676백만원
합계				321,109.7백만원

4. 결론 및 건의사항

- 이에 2018년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CBU-105) 예산 136억 7천 6백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한편, 전투 예비탄 중 2.75다목적분산탄(MPSM), DP-ICM BB탄두, 육군과 해병의 155밀리 DP-ICM BB, 40밀리 이중목적고폭탄, 230mm급 차기다련장 사업 중 확산탄(유도분산탄), K-9 자주포 탄약 중 DP-ICM,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수직형) 예산 삭감 및 기보유한 확산탄의 전량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삭감 요구액

- 확산탄 관련 3,211억 970만 원 전액 삭감

(146)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R&D)(신규)(2531-315)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8년 예산	삭감 요구액
방사청	신규	275,798	'18~'29	349	349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① (사업 목적) 적 중심의 핵심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연구 개발하여 확보하는 사업
- ② (향후 기대 효과) 전력화 시 적 중심 주요표적에 대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군의 독자적인 타격 능력과 전쟁 억제 달성을 위한 자주적 정예 군사력 수단 확보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 목적이 국제법과 헌법에 위배된다.

- 국방부는 500km의 사거리를 갖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장차 개발 예정인 한국형 차기 전투기(보라매)에 탑재해 북한 적 중심의 핵심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말한다. 즉 2차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이른바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압박 단계에서 북한 지휘부를 공격하는 ‘킬체인’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의 미사일로 개발되는 것이다.

-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 시 선제공격해 북한 지휘부 또는 이동식발사대 등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무모한 작전수행체계다. 킬 체인은 폐기되어야 할 작전개념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 상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은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위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된다.
- 또한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5조 1항) 평화통일을 규정함으로써 무력통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북한 선제공격 용도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유엔헌장과 우리 헌법에 배치된다.
-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NO 및 평화협정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는 한반도 평화통일번영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괴멸을 목적으로 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 북한 지휘부의 괴멸을 목표로 한 사정거리 500Km의 공대지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 등의 맞대응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불러와 남한의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게 한다.

②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며 유사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남한은 이미 2016년부터 사정거리 50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 KEPD 350K)을 실전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까지 170발을 도입할(도입가 4900억 원) 예정이다. 이어 90발(2000억 원)을 추가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타우러스는 F-15K 한 대에 두 발씩 장착할 수 있다. 260발이면 F-15K 60대 모두를 무장시키고도 140발이 남는다. 현재 도입하기로 결정된 타우러스 260발도 과잉전력인 셈이다.

- 남한 공군은 타우러스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 공군은 사정거리 270km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SLAM-ER, 120km의사거리를 지닌 AGM-84 ‘하푼’ 공대지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중복사업이며 만약 전력화된다면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미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외에도 공군은 탄두중량은 작으나 사거리 및 유도방식이 유사한 다양한 공대지 유도폭탄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공대지 유도폭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방사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73쪽)
- 공군뿐 아니라 해군과 육군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사거리 500~1,000Km의 함대지 미사일 ‘해성-2’와 사거리 500Km의 잠대지 미사일 ‘해성-3’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사거리가 각각 500km, 1,000km, 1,500km에 달하는 순항미사일 현무 3A, 현무 3B, 현무 3C를 2008년부터 양산해 이미 전력화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3군 합동작전의 관점을 결여한 것으로 자군 이기주의의 표출이자 예산낭비라 할 수 있다.

③ 사업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으므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

- 한국 국방연구원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타당성 조사(2016.11~2017. 6)에서 “군의 독자적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 예산 반영 타당”(2018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사업설명서』, 1258쪽)하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군의 독자적 타격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는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한국군의 공대지, 지대지, 함대지 미사일 전력은 이미 주한미군의 미사일 전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재정법 제50조 3항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2조 5항은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차 사업은 중복 투자와 전력낭비가 확실한 만큼 국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의결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50조3항에 따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도록 의결
- 내년도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사업 예산 349억 원 전액 삭감

(123) F-35A (2433-300)

1. 개요

(단위 : 백만 원 %)

소관	사업 성격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안	삭감 요구액
방사청	계속	7,796,405	12년~21년	1,302,479	1,302,479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 ① F-35A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②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인 억제 능력 구비
- ③ 북한의 대량 공중 기습 공격 대비, 단기간 내 공중우세 확보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①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라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한국군은 언론 등의 근거 없는 속설과 달리 미사일 전력에서도 북한에 질적, 양적으로 우위에 있다. 임호영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도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 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경향신문, 2017. 9. 9)
- 유일한 북한 우위의 비대칭 전력은 핵뿐이다. 그러나 이를 선제공격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은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증언이나 핵전력 우위의 미국도 소련을 선제공격하지 못했던 냉전 하의 미소 대결 구도가 이를 입

증해 준다.

<남북 미사일 전력 비교>

남한				북한				
종류 ¹⁾	사거리	수량	비고	종류 ²⁾	사거리	수량	비고	
현무-1	180~250km	500 ³⁾	탄도 미사일	KN-02 ⁵⁾	120km	100	탄도 미사일	
현무-2A	300km	45 ⁶⁾		스커드 B ⁷⁾ (화성-5)	300km	600-800		
현무2B	500~800km			스커드 C ⁸⁾ (화성-6)	500km			
현무 2C	800km			스커드 ER ⁹⁾ (화성-7)	1000km	수 기		
현무 3A(천룡 1)	500km	개발 중	순항 미사일	노동 ¹⁰⁾	1300~	200-300		
현무 3B(천룡 2)	1000km			무수단 ¹¹⁾	4000km	20~30		
현무 3C(천룡)	1500km			대포동 ¹²⁾	~10000km	10		
현무 3D/4	3000km			KN-08/14 ¹³⁾	~11500km	6		
ATACMS 블록 I	180km	111 ¹⁴⁾		KN-11 ¹⁵⁾	1200km	개발 중		SLBM
ATACMS 블록 IA	300km	110 ¹⁶⁾		화성-14	10000km~	개발 중		
				화성-12	4500km			
				금성-3 ¹⁷⁾	130~250km		지대함 순항	
소계		1,021~1,921		소계		1,000~1,300		

1)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south-korea/>
 2)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dprk/>
 3) 세계일보, 2015.6.3
 4) 2016년 현재 현무미사일(순항, 탄도 포함)800기 보유. 2017까지는 1700기, 2020년까지는 총 2000기 확보 예정 (SBS, 2016.1.25)
 5)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N-02/>
 6) 세계일보, 2015.6.3
 7)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hwasong-5/> 국방부, 『2016 국방백서』 등 참조
 8)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hwasong-6/> 정규수, 『ICBM, 그리고 한반도』 등 참조
 9)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hwasong-7/>
 10)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no-dong/>
 11)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musudan/>
 12)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taepodong-2/>
 13)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N-08/>, 미국방부 의회보고서,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PRK 2013』 등
 14) 세계일보, 2015.6.3
 15)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N-11/>
 16) 세계일보, 2015.6.3
 17)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kumsong-3-kh-35-variant/>

- 스텔스 전투기인 F-35A는 킬 체인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무기체계다. 군은 킬 체인을 명확히 대북 선제공격 수단으로 밝히고 있다.
- 남한의 대북 재래식 선제공격은 오히려 북한의 대남 핵과 재래식 전력의 공격을 자초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를 초래하게 된다. 배년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누군가가 전쟁 발발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의 공격으로 1천만 명의 서울 시민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정식을 풀 때까지 군사 해법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은 남한의 대북 선제공격이 가져올 위험성을 명확히 말해 준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초공세적 무기체계인 F-35A의 도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② F-35A의 도입은 과잉전력이며, 전력 공백 우려도 왜곡된 주장이다.

- 일본의 『방위백서 2017』에 따르면 남한의 전투기는 620대, 북한은 560대로 남한이 양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THE MILITARY BALANCE 2016』에 따르면 남한이 556대를 보유한 남한이 545대를 보유한 북한에 양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 또한 남한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1950~60년대 만들어진 2세대 구형 전투기로 질적으로도 남한이 일방적인 우위에 있다. 북한 전투기 중에서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MIG-29 18여 대뿐이다. 하지만 MIG-29는 F-15K에 비하여 표적 탐색능력, 무장운용 능력, 전천후 정밀공격 능력, 전자전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 F-15K의 레이더 탐지거리는 160km인 반면 MIG-29의 레이더 탐지거리는 100km로 공대공 교전에서 남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남한 공군은 F-15K 1대가 북한 MIG-29 10대와 필적할 만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한 F-15K 전투기 1대가 北 미그-29 10대와 필적’, 매일경제, 2009.6.19.) 따라서 F-35A 도입은 과잉전력이며 노후 전투기 도태로 인한 전력공백 주장도 근거가 없다.

③ 북한의 대량 공중 기습 공격에 대비하고 단 기간 내 공중 우세를 확보하

기 위해 F-35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항공전력 운용의 기본을 부정하는 상식 밖의 주장이다.

- 주지하다시피 공군의 전력구조는 High-Medium-Low급으로 구성된다. 이 중 High급은 통상적으로 전략기동에, Medium급은 요격이나 해상 지원에, Low급은 CAS 등 지상지원에 운용된다.
- 전쟁 초기 대량 공중 기습 공격을 감행할 북한의 기종은 우리의 Low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MIG-17/19/21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구세대 기종은 현 남한의 주력 기종인 F-16으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의 낡은 기종의 기습에 차세대, 그것도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를 도입해 대응하겠다는 것은 모기를 잡기 위해 칼을 꺼내 드는 격으로, 이는 전장에 따른 공군 전력 배분과 운용의 기본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④ 첨단기술과 절충교역 확보 실패로 국내 항공산업 진흥에 역행

-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기종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절충교역 조건을 제시한 F-15SE를 부결시키고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성능을 추가하여 사실상 F-35A만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상 방식도 공개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어 F-35A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대미 협상에서 ‘을’의 처지로 전락했으며, 첨단기술 등 KF-X 개발에 필요한 절충교역 확보에 실패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 그런데 최근 밝혀진 F-35A 관련 문서에는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38억 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항목에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 기술 등 4개 핵심기술 이전도 포함되어 있다.('F-35 기술이전 가치 부풀려졌다—공짜라던 위성엔 1000억 지급 정황', TV 조선, 2017. 10. 14) 이는 F-35A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이 기종 선정을 위해 절충교역에 4개 핵심기술 이전을 포함시켜 가치를 부풀렸고 최종 계약이 체결되자 핵심기술 이전을 모두 거부한 기만적 행위를 한 것이다.

- 한국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완제품 수입을 통해 전투기를 확보해 왔다. 국내면허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미국에 의해 제약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획득에 실패해 국내 항공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F-35A 도입 과정에서도 첨단기술과 절충교역 확보 실패로 한국 항공산업 진흥에 역행하게 되었다.

⑤ 고정가 계약으로 인한 혈세 낭비 초래

- F-35A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FMS 방식은 상한가 없는 개산 계약으로 기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2016년 11월 록히드마틴과 3차 수정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F-35 도입을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해 체결했으며, 기체 1대당 고정 가격은 처음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1200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그런데 록히드마틴의 F-35A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도입할 초도생산 대당 가격은 애초 보다 7.3% 인하된 1,060억원이다. 이 가격대로라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에 록히드마틴으로부터 8,4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F-35A 기체 가격을 미국에게 유리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함으로써 8,4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 방위사업청은 이 계약을 통한 F-35A 기체가격 하락 분을 록히드마틴이 비용 문제를 내세워 지원을 중단한 군 정찰위성 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미 정찰위성 사업에 약 1,000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사실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 이렇듯 F-35A 도입 사업은 또 다시 미국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혈세낭비를 초래했으며, 록히드마틴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정찰위성에 방위사업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계약을 위반한 것인 만큼 F-35A 도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특히 이러한 불평등 계약을 거듭 자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방사청에 대한

전면 감사,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

⑥ 미국과 미 방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 F-35A는 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FMS 방식은 미국과 미 방산업체의 이해를 한국 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일방주의적 거래 방식이다. 이에 국방부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FMS 방식의 변경 여부를 질의(2012. 9)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국방부가 F-35A의 도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서두르다 보니 불리한 FMS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대외군사판매와 상업구매 방식 비교>

대외군사판매(FMS)	조건	상업구매(DCS)
정부 대 정부	계약당사자	정부 대 업체
상한가 없는 개산계약	계약방법	확정 계약
한국 정부 납부	이행보증금	외국 정부·업체 납부
부과 불가능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없음	선급환급 보증금	있음
추진 곤란	절충교역	가능(협상으로 범위 결정)
구매국 불이익 감수	계약위반 발생시	판매자 계약 위반시 고정된 벌금 부여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 미충족	구매국 요구 수용 여부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 충족

(「미국 대외무기판매제도(FMS)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문형일, 2012. 2, 25쪽)

- FMS 방식 도입으로 2000억 원에 달하는 대외군사판매(FMS) 행정비를 미국에 내야 하며,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과도 불가능하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때 선급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 그러나 FMS 방식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도 한국처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도 FMS 방식으로 F-35를 도입하지만 전자전 장비를 비롯한 자국산 부품을 장착하는 등 사실상 공동생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F-35A의 도입은 막대한 도입 비용에 비하여 우리 국방에도, 항공산업의 육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과의 불평등한 계약으로 혈세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전형적인 비효율 낭비 사업이다. 따라서 F-35 도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차기 전투기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2018년도 1조 3,024억 7천 9백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